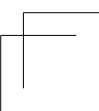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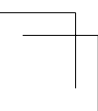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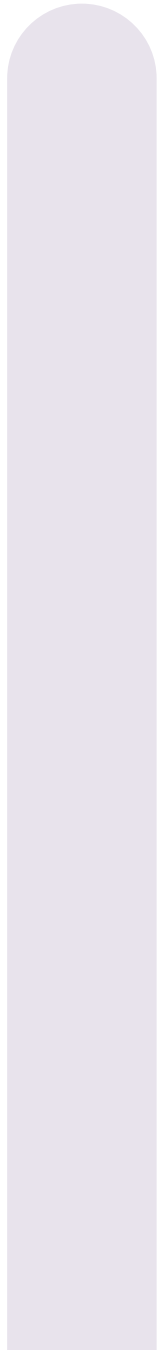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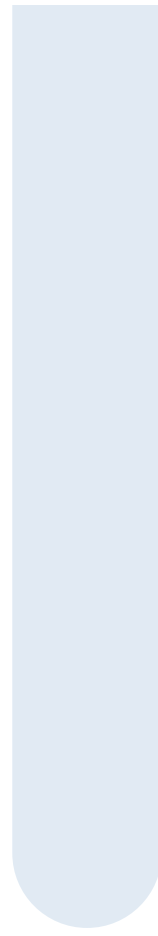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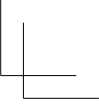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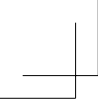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575-13

# 제2차 '20~'24 아동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b>I. 수립배경</b>	5
<b>II. 제1차 기본계획 평가</b>	9
1. 주요 내용 및 성과	10
2. 개선 필요사항	11
<b>III. 아동정책 수립 여건 및 정책방향</b>	13
1. 환경 변화와 우리 아동의 삶	14
2. 향후 정책방향	21
<b>IV. 주요 정책과제</b>	23
1. 권리주체 아동권리실현	26
2.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38
3.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62
4.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76
<b>V. 기대효과</b>	85
(참고1)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87
(참고2)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현황	88
(참고3)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현황	89

“

존엄·권리 주체  
사회·국가 발전 의미  
‘아동 행복’  
삶의 만족도 향상

”

I

수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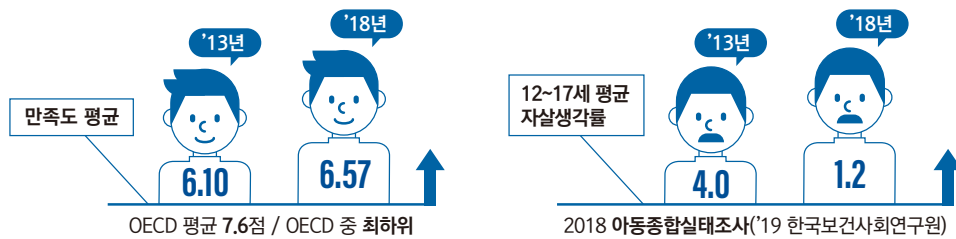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30-50 클럽 7번째 국가\* 가입 등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인의 행복 수준은 낮은 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로 美, 獨, 英, 日, 佛, 伊에 이어 7번째

\*\* 전 세계 158개국 중 국민행복도는 47위 ('15. 세계행복보고서)

○ 또한, 아동 행복(삶의 만족도)도 국제 비교시 최하위권



- 아동 불행은 개인 차원 문제를 넘어, 건전하고 역량 있는 성인으로 발달을 저해하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 필요

**그간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 수립·추진, 아동의 보편적 복지 확대 등 노력하였으나, 아동의 행복수준 향상에 한계**

○ 이에, 아동을 보호·양육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

\* '19.5월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수립하여 아동권리 보장,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 새로운 방향 설정

○ 보다 근본적인 아동의 행복 향상을 위해 복지, 교육, 여가·문화, 안전, 사법절차 등 정부정책 전반에 아동중심 관점을 반영할 필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변화도 고려할 필요**

○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장기화, 비대면 일상화(거리두기)로 아동 방임, 학대 등 위험 노출이 증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을 통해 ‘아동 중심’, ‘권리 주체’ 라는 기조가 정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이 아동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참고

## 우리나라 아동관련 정책 현황 및 고려사항

## 1 현황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수립 방향을 정하는 「아동정책 기본 계획」 외에 다양한 분야에 종합계획 존재
- 다른 아동 관련 계획은 30여개로 분석되고 있으며,
  - ① 아동을 대상으로 특정 정책목적(교육, 복지, 안전·보호 등)을 위한 계획,
  - ② 일반인 대상이나, 아동과 밀접한 계획으로 구분 가능

## ① 아동 대상

- 청소년육성기본계획
- 보육종합대책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인성교육종합계획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 어린이안전종합대책

-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종합대책 등

## ② 일반 대상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교통안전기본계획
-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 식품안전종합대책 등

## 2 아동정책 수립시 고려 필요사항

-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과 동시에 존엄·권리를 지닌 권리 주체라는 복합적 특성을 고려
- ‘아동 행복’은 성인기까지 연결되어 개인 전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요소
  - \* 아동기 낮은 행복감은 아동 삶의 질, 자존감 하락 → 성인기 불행으로 연결, 개인 전체 삶의 질 저하  
→ 건전한 사회,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
- 선진국은 정책 전반에 아동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고 충분한 아동보호 하에 아동 권리가 실현되어 ‘아동 행복’이 향상되도록 노력 중

## 주요 선진국 아동정책 방향

- ▶ 아동 권리 등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헌법 명시(핀란드,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기본법 규정 등을 통해 아동중심 관점이 정책 전반에 투영되도록 함
- ▶ 또한, 행복한 아동을 위해 아동·가족에 대한 국가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
  - \* (GDP 대비 투자비중) 핀란드 3.1%, 독일 2.2%, 스위스 1.7%, 벨기에 2.8%, 스웨덴 3.6%, 영국 3.4%, 프랑스 2.9%, 일본 1.3% vs 한국 1.2%



‘아동 행복’, ‘권리주체로서 아동 관점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 정비,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아동 정책 정립 필요

“

아동 최우선 원칙  
행복한 아동  
아동 중심  
아동 권리

”



# II

## 제1차 기본계획 평가





# 01

## 주요 내용 및 성과

### 1 주요 내용

▶ ‘아동 최우선 원칙’을 목표로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되도록 5대 영역별 정책 추진

구분		정책 방향 및 주요 내용
비전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목표		아동 행복도 증진, 아동 최우선 원칙 기반 실현 조성
5대 영역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누리과정 내실화, 문화인프라 확충 등 아동이 개인의 삶과 미래사회 발전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2. 건강한 삶	정신 건강 관리 인프라 확충, 생활습관(비만) 관리, 아동 예방접종률 향상 등 아동 건강관리체계 마련
	3. 안전한 삶	아동학대, 불량식품 등 아동기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마련
	4. 함께하는 삶	방과 후 돌봄 체계 정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빈곤, 장애, 다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 보호대책 마련
	5. 실행기반 조성	육아휴직 급여지원 등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확충, 아동 친화적이고 편안하게 양육·보호될 수 있는 발달환경 조성

### 2 주요 성과

▶ 아동 정책 전반을 포괄한 최초의 중기계획으로써 체계적 정책 틀 제시

- 그간 아동 관련 부처와 영역에 국한되어 분절적·단편적으로 추진되던 아동정책을 범부처 국가정책 차원에서 체계화
  - 아동 삶의 질과 행복,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지향을 명시하고 중앙·지방정부 아동정책 수립 및 실행의 추진기반 마련

▶ 아동권리·행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정책 확대 계기 마련

- 아동수당('18.9), 아동의료비 경감('19), 고교 무상교육('19) 등 보편적 아동정책 발전과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강화(온종일 돌봄, '18) 토대 마련



## 02

## 개선 필요사항

### 1 각 부처 아동사업을 나열, 「행복한 아동」이라는 비전 체감에 한계

- ‘아동 행복도 증진’ 등 아동고유 특성을 감안하고자 했으나,
  - 미래준비, 건강, 안전, 함께하는 삶 등 분야에 각 부처 176개 과제를 망라하여 ‘아동 행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과 체계적 연계 미흡
- 또한, 행복과 밀접한 참여, 놀이·여가 등 과제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행복’이라는 비전과 과제 간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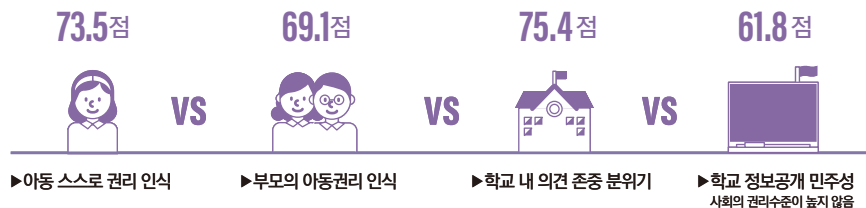


각 부처가 추진하는 세부사업 열거방식을 최대한 지양하고 아동정책 고유 영역을 중심으로 핵심과제 제시 필요

### 2 아동을 정책 대상화 객체화한 경향

- 아동권리 실현, 아동 행복 등 아동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정책목표별로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
  - \* (사례 : 양육지원체계) 아동 중심 관점 보다는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아동 양육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돌봄 서비스 등 지원
- 이에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에 한계 \*가 있었고, ‘아동 행복도’도 소폭 향상에 그친 것으로 평가

18. 굿네이버스



아동을 대상화해 개입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아동과 관련한 기존정책 및 시스템에 변화를 주기 위한 ‘아동 중심’ 정책기조 강화

### 3 「아동 중심,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미흡

○ 아동, 청소년 관련 사항은 법이 분리되어 있고, 다양한 사안을 개별 법령에서 규율하는 등 아동 관련 법령 세분화\*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 그러나, 대한민국 아동 정책 전체상(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화·종합화 역할을 하는 법령은 부재

- 이에 아동정책 전반에 ‘아동 중심’, ‘권리 주체로서 아동’에 대한 고려가 약한 상황

\* (예) ▲ 아동복지법은 보호필요아동 관련 사항 중점 규정 → 아동권리실현, 보편아동 관련 사항이 상대적 미흡  
▲ 국민건강증진법은 전 국민 건강증진 목적 → 발달기 아동에 대한 고려 필요



아동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아동정책의 이념, 목표, 기본방향, 아동의 핵심권리, 운영 원리 등을 규정한 기본법 체계 마련

### 4 아동-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투자 필요

○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복지 확대로 아동에 대한 그간 재정투자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에 비해 낮은 수준

\* (15년 GDP 대비 지출비중) OECD 평균 2.0% vs 한국 1.2% (아동수당 포함시 1.36% 추정)

○ 노인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아동에 대한 재정 투입도 낮음

구분	아동·가족 지출(A)	노인 지출(B)	(A·B)	비교(대상사업)	
				아동	노인
예산 규모	계	22.0조원	64.3조원	△42.3	▶(현금)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소득(현금)	8.5조원	61.1조원	△52.6	▶(현물)노인요양 시설
	현물(서비스)	13.5조원	3.2조원	12.3	▶(현물)보육료, 돌봄 지원 등 확충, 양로 시설 운영 등

\* 대상사업 기준 등에 따라 비교금액은 다를 수 있음(19년 기준 / 출처: 보사연)



미래세대인 아동의 인적자본 질 제고를 통한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아동·가족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필요

# III

## 아동정책 수립 여건 및 정책 방향





01

환경 변화와 우리 아동의 삶

1 경제·사회 고도화 속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은 지체

→ 환경변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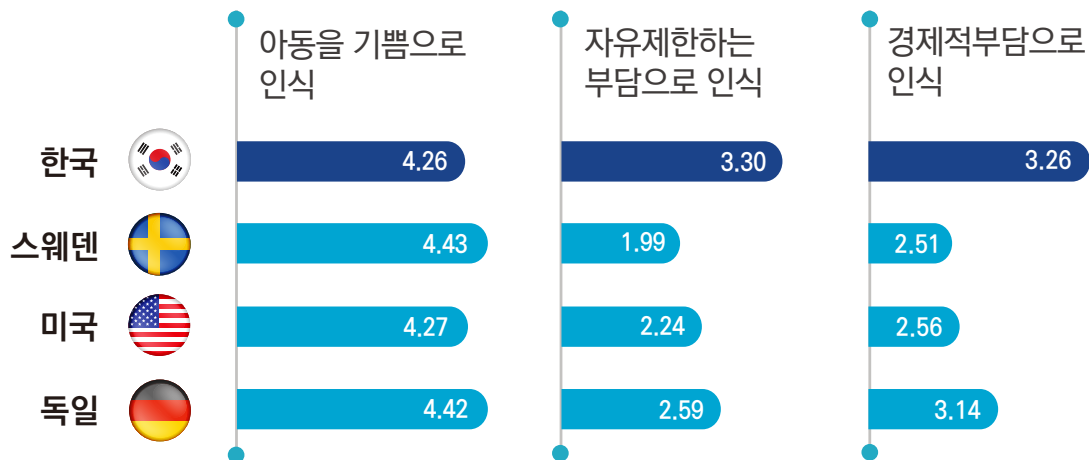
○ 그간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 사회의 시민·권리의식도 성숙되었으나, 아동 인식 변화는 지체

-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훈육 대상으로 인식
- 점차 아동을 권리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나, 명목적 수준에 그치는 등
- ① 사회, ② 가정에서 변화는 한계

① (사회인식) 아동권리를 인지는 하고 있으나, 각자 이해와 관련될 경우, 아동권리가 무시되거나 포기되는 등 사회적 배제 현상 발생

- \* (사례) ① 노키즈존 논란 → 아동을 성인보다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고 배제함
- ② 특정집단이 이익을 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동반하여 집회참가 등

② (부모인식) 과거 아동은 '기쁨·축복의 존재' 였으나, 최근에는 '양육비 부담, 자유 제한' 등으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 양면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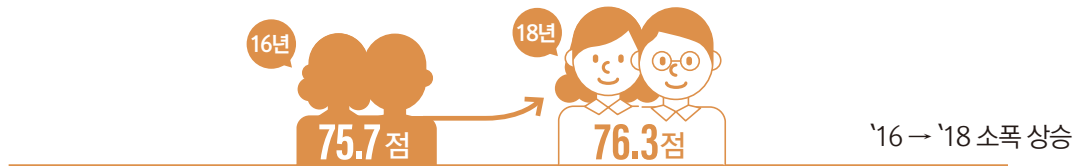
→ 한국 부모는 아동을 기쁨으로 높게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수준도 높은 편

▶ 아동 삶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사회와 부모의 양면적 태도, 아동 권리에 대한 지체된 인식이 아동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 아동 행복감을 저해

- (사 회) 아동 스스로의 권리·참여 의식은 높으나, 학교 등 사회에서 참여를 경험해본 수준은 낮음
  - \* (아동 참여의식) 국가, 지자체의 아동정책 수립과정 등에 참여·의견제시 필요성 3.06점 vs (참여경험) 참여·의견 제시한 경험 1.42점 (4점 만점 / '18. 보사연)
  - 아동을 정책의 객체로 인식하여 각종 행정·사법절차, 정책결정 과정에서 아동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제도 미흡
- (가 정) '부모로부터 존중받은 경험' 체감도의 경우 큰 변화 없음

'18. 굿네이버스



○ 형식적 아동권리 인식에 따라 '보호', '편의', '비용'을 이유로 아동의 인권, 노동권, 안전권 등 각종 권리가 소홀히 되는 경향

- (인 권) 형사법 위반이 아니어도 아동은 보호를 이유로 소년원 처분을 받거나(우범소년), 보호 주체의 친권제한으로 보호아동의 권리제한(통신계약 애로) 등
- (노동권) 아르바이트 등 아동 노동시 부당대우, 수익을 목적으로 키즈 유튜버에게 자극적 행위 실시 등
- (안전권)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족(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율 : 4.9%), 운전자 안전의식 미흡 등으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 \* 교통사고 등으로 「국민청원」 발생시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음



일상에서 아동행복, 아동권리 등 아동 최우선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리주체로서 아동」 패러다임을 강화하고, 아동 참여, 의견 청취, 부모교육 등 각종 정책에 아동 중심 관점 체계화 필요

## 2 미래준비를 위한 경쟁 심화, 현재 행복에서 소외

### ④ 환경변화 현황

○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폰 등 신기술이 일상화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미래사회 급변 전망

- (긍정적)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정보제공, 사물·사람 간 인터넷 연결, 공유경제 활성화, 각종 기술의 융·복합으로 등 개인 삶의 편의성 향상
- (부정적) 직업구조 다양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양극화 심화\*\*, 교육, 소득 등에 따른 정보·활용 격차(Digital Divide) 확대 우려

- \* 일자리 감소(713만)가 창출(196만)보다 커 일자리 감소가 우려될 것으로 예측(16 다보스포럼)
- \*\* ▲ AI, 빅데이터 전문가 등 첨단기술 고숙련 인력 수요 증가 vs ▲ 다수를 차지하는 반복, 중숙련 직무 인력은 임시직 등으로 전환 ▲ 로봇 등 노동절감형 생산기술 확산으로 일자리 감소 등

### ④ 아동 삶에 미치는 영향

○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아동 행복에 부정적 영향 가중

- 지나친 경쟁을 강조하는 현실은 ‘아동이 바라는 세상\*’ 과 괴리(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19.10))
- \* ▲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 ▲ 밤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세상 등(5·6차 아동보고서)
- \*\* ▲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우려, 개선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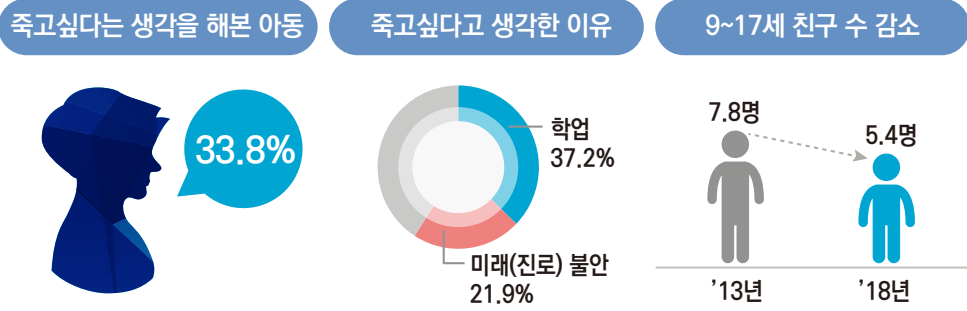
■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커\* 부모가 소위 ‘좋은 대학’ 입학에 위한 학업 경쟁으로 내모는 경향\*\* 존재

- \* (5분위 대학 vs 1분위 대학간 임금격차) 노동시장 진입시 14% 차이 → 점차 최대 46%까지 벌어짐
- \*\* 최근 3년간(16~18) ▲ 사교육비 '16. 25.6 → '18. 29.1만원 / ▲사교육 참여율 '16. 67.8 → '18. 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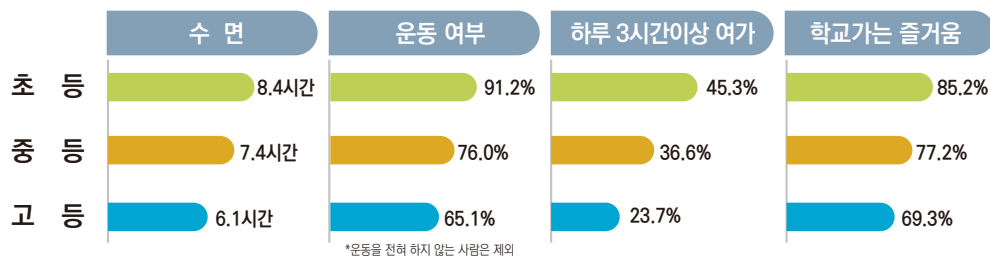
■ 과도한 경쟁은 학업 스트레스, 수면·운동·여가·활동시간 부족, 또래관계 결핍 등을 유발



과도한 학업 경쟁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수면, 운동, 여가, 학교가는 즐거움은 고학년일수록 감소



- 한편, 단순 지식 중심의 과도한 경쟁 교육은 미래에도 부적합\*

- \* ▶ 기술혁신이 지속되어 기존 지식 필요성 감소,  
 ▶ 시로 대체 어려운 복잡한 문제해결 역량이 중요

유형화되지 않은, 어렵고 복잡한 미래 문제해결을 위해 창의, 융합, 공감, 설득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놀이·여가 등 활동이 중요

- 뉴미디어(유튜브 등) 등장,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 상 유해매체(성인영상물 등) 접근성이 높아져 신중 범죄 노출, 권리 침해 등 발생 가능

- \* (예)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 아동 유튜버의 아동학대 논란 등



- ▶ 과도한 학업 경쟁이 아닌, 다양한 자유활동을 통해 아동 행복을 향상시키고, 창의, 융합, 공감 등 미래 문제해결 역량 배양 필요
- ▶ 신기술 상용화, 뉴미디어 등장에 따라 우려되는 신체·마음건강, 안전 위협, 권리 침해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응 관리 필요

### 3 지속되는 격차로 빈곤 아동의 건전한 발달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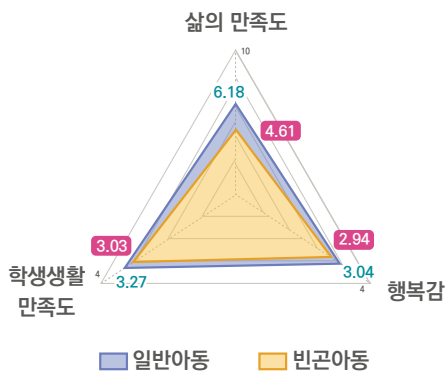
#### ▶ 환경변화 현황

- 외환위기(IMF) 이후, 심화된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가 지속되는 추세
  - \* (소득 9분위 대비 1분위 배율) (한국) '04) 5.12 → '14) 4.79 vs (OECD) ('04) 3.50 → ('14) 3.46
  - 노동시장 양극화, 교육격차 확대 및 사회 이동성 약화 등에 기인
-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아동빈곤율은 14.5%('17 잠정치)로 OECD 평균(13.1%)에 비해 높은 수준

#### ▶ 아동 삶에 미치는 영향

- 빈곤은 아동 삶의 질, 행복도를 낮추고, 아동 발달에 악영향
  - 빈곤은 아동에게 건강, 교육, 관계, 문화, 여가, 꿈 등 복합적인 불평등, 차별감을 느끼게 하여 심각한 박탈감 유발
  - 모든 삶의 만족도 분야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빈곤아동이 낮으며, 이러한 격차는 여전히 유지

분야별 만족도 격차 ('13년)



분야별 만족도 격차 ('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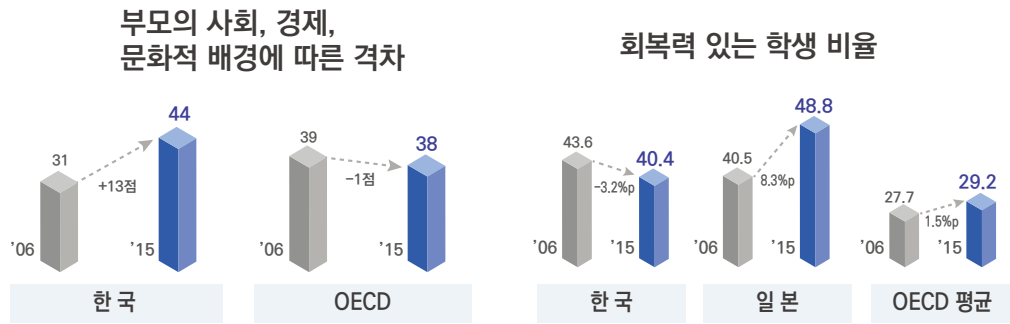
\* 점수 척도, 질의 문항 등이 달라 '13년과 '18년의 단순비교는 어려움

- 빈곤아동의 불행이 성인기에도 이어지며, 다음 세대로 대물림 우려

- 신체, 인지, 사회적 발달 등에 부정적 영향

- 주거 빈곤 아동은 아동 비만을 및 방임·성추행 경험 증가, 학교생활 적응도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 배경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회복력 있는 학생\*'의 비율도 하락하는 등 빈곤층의 학업성취도 저하 현상 심화 추세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소득 등 하위 25% 학생이 상위 25% 성적을 받는 경우)



○ 지속되는 경제적 격차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의 학대, 이혼, 가출 등 보호필요 아동이 꾸준히 발생 (연 4~5천여명)

- 보호필요아동은 아동 관점에서 대규모 시설보다는 가정위탁,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 중심의 가정형 보호체계 제공 필요

\* 대규모 시설은 엄격한 규율, 통제된 상호작용, 개인공간 부재 상태로 운용되기 쉬우며, 자존감 낮고 수동적·의존적인 특성이 형성될 우려

- 가정형 보호비중\*이 시설에 비해 높은 편이나, 대부분 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존, 개별 위탁가정 상황에 따라 보호 수준의 편차 존재

\* (보호비중 : 가정형 vs 아동양육시설) 54%(1.5만명) vs 46%(1.3만명) ('17년 기준)



- ▷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등 지원, 빈곤 악순환 방지를 위한 보호종료 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 ▷ 보호필요아동이 아동중심 관점에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기반 정비 필요

## 4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양육 역량 저하, 위기 아동 증가 우려

### ▶ 환경변화 현황

- 코로나19가 곧 세계로 확산됨에(3.12일 WHO 팬데믹 선언) 따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와 함께 가정 내 돌봄시간과 비용 급증
  - \* ▲IMF, 대공황 후 최악의 경기침체 예상('20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3.0% (당초 전망대비 △6.3%p))
  - ▲감염병 확산세,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각종 지표 지속 하락 중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온라인·디지털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 코로나19 백신 개발까지 상당기간 소요, 예방·치료방법 없는 신종 감염병 우려로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비대면 문화 정착 가능

### ▶ 아동 삶에 미치는 영향

- 감염병 확산 방지 측면에서 가정양육 중요성 커지고 있으나,
  - \* 감염병 확산시 어린이집, 학교 등 시설 미운영 → 가정 양육의 중요성이 더 커짐
  - 경기침체 장기화가 소득감소 등 가계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가정 아동양육 역량'을 저해하고 아동 위험 노출 가능성 증가
  - \*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불안장애) 발생, 19%가 중증도 이상으로 조사(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 양육자의 심리적 불안이 아동학대 등 유발 가능

#### 경제적·정서적 측면에서 가정 아동양육 역량 저해 가능성



- ▷ (경제) 가정 소득감소로 의식주 등 아동 성장·발달에 충분한 물질적 지원, 환경악화 가능
- ▷ (정서) 생활고로 가족 유대 및 지지 약화, 가족 분리가 우려되고 양육자 스트레스증가 등으로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도 증가

- 비대면 일상화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적 고립·방임과 효과적 대응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가능
  - \* (예) 아동학대 발생 → 비대면 일상화로 학대 신고가 어렵고 방문조치 등 긴급대처가 미흡할 가능성 有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가정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상황을 감안한 아동보호·돌봄체계 확충 필요



## 02

## 향후 정책 방향

### ▶ 「현재 권리 주체로서 아동」 인식 명확화 및 정책에 체계적 반영

- 아동정책기본계획 뿐 아니라, 다른 아동 정책들도 ‘아동 중심’, ‘권리 주체’ 관점이 투영되도록 법·제도 체계 구축
- 생활 속에서 인권, 참여, 노동, 의견표명권 등 각종 권리를 보장하여 자존감 향상 등 아동 실질적 행복 체감도 제고

### ▶ 아동 희망에 따라 활동하고 행복하게 발달하는 환경 조성

- 지나친 학업 경쟁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동가족 우대제도 도입 등 親 놀이환경 조성
  - 진로·체험 중심의 교육 혁신과 함께 신체·감성·지식의 균형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형 인재로 성장
- 건강한 생활습관을 조성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아동 신체·마음건강 관리 강화
- 디지털미디어 발달에 따른 신종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안전관리 강화

### ▶ 격차를 넘어 공정한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책임 강화

-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가정 친화적이고, 공적인 보호체계 구축
- 취약계층 아동의 소득·주거지원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한부모·다문화 등 상이한 배경의 아동에 대한 정책적 포용 강화

###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한 아동정책 혁신

- 가정양육 역량 강화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아동보호·돌봄 체계 확충

“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 IV

## 주요 정책과제





# 아동이 행복한 나라



## · 목표 ·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

-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 생활 속 아동권리 실현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01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02

-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 아동 신체와 마음건강 관리 강화
- 폭력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 아동중심 공적 보호 · 돌봄체계 구축
-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03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04

-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 재난 상황에 대응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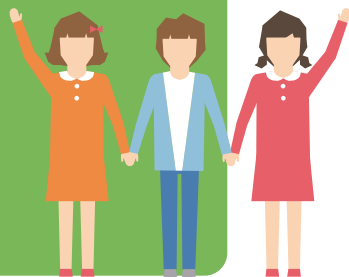
## I 달라지는 모습 : 성과지표

	현재 ('19)	목표치 ('24)	통계 생산
총괄	<b>삶의 만족도*</b>	OECD 28개국 최하위 (6.57점, '18) → OECD 최하위 탈피 <b>7.0점 이상</b>	아동종합실태조사, 복지부(5년)
	'19년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 → <b>90% 이상</b> (불수용 분야 제외한 수치)	UN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복지부(5년)
권리	<b>우리 사회가 아동 청소년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b>	77.1% ('19) → <b>80.0%</b>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여가부(2년)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77.3% ('19) → <b>80.0%</b>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여가부(2년)
발달	<b>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비율*</b>	76.5% ('19) → <b>80.0%</b>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여가부(2년)
	여가시간 만족도 (13~19세)	43.3% ('19) → <b>47.0%</b>	사회조사 통계청(2년)
	주관적 건강수준	70% ('19) → <b>73%</b>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교육부복지부 질병관리본부(1년)
	영유아 건강검진율	74.5% ('18) → <b>82%</b>	건강검진통계 건강보험공단 (1년)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명('16) * OECD 21위 → <b>0.6명</b> * OECD 7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행안부) OECD
	아동·청소년 전반적인 폭력 피해율	8.5%('18) → <b>8.0%</b>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가부(2년)
	재학대 판정률	10.3% ('18) → <b>7.7%</b>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 복지부(1년)
	<b>공적 아동보호체계 완비*</b> (아동학대 전담인력 배치 목표대비 완료율)	- → <b>100%</b>	복지부 자체생산 복지부(1년)
보호	가정위탁 보호율	23.9% ('18) → <b>37%</b>	복지부 자체생산 복지부(1년)
	공공보육 이용률	28.4% ('19) → <b>40%('21)</b> *이후 목표치 재설정	복지부 자체생산 복지부
	아동결핍지수 *전체 평균 지수는 1.58점	4.50점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18) → <b>4.00점</b>	아동종합실태조사 복지부(5년)

\* **삶의 만족도** 등 4개 지표는 핵심 지표

# 1.

##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01

## 각종 정책에서 아동권리가 실현되도록 정책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1 현황

#### ① 형식적 아동권리 인식과 아동 중심 관점 미정착

- 특정 정책목적(교육, 복지, 안전·보호 등)에 따라 아동을 규정하는 법만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도 아동을 대상화 객체화 경향
-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도 아동 행복, 생활 속 권리 실현과 밀접한 과제 수도 적은 등 ‘아동 중심’ 관점 구현에 미흡

#### ② 아동 행복도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13년에 비해 아동 행복도는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최하위권\*으로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 \* ▲(행복도 점수) ‘13) 6.10점 → ‘18) 6.57점 (OECD 평균 7.6점 / OECD 국가 중 최하위)
- ▲(행복도 6점 이상 응답자 비율) ‘13) 60.3% → ‘18) 81.8% (30개국 유럽국가와 비교시 27위)

### 2 정책 방향

#### 주요 관리 지표



- ▷ 아동기본법 제정: '22년까지 법 제정
- ▷ 아동정책 영향평가: '24년까지 30여개 아동 관련 계획에 대한 전문평가 실시

#### 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정책에 아동권리, 아동중심 원칙 적용·확산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 (법) 아동권리보장, 아동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다른 관련법에도 아동중심 철학 적용
- (제도) 중요 아동정책은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24년까지 30여개 아동 관련 계획에 대한 정책 영향평가 실시

### 3 중점 추진과제

#### ① 아동 중심 정책 반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 (가칭)아동기본법 제정

- 아동 권리보장, 아동 보호,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실체적 사항을 정하는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 아동권리, 정책 등에 관한 기본이념부터 아동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무, 아동 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 등 규정



#### 예시 : 주요 내용(안)

\* 법안제정 과정에서 내용 변경 가능

- ▶ 아동권리, 정책에 관한 기본이념
  -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비차별 원칙,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 등
- ▶ 아동권리, 보호, 건강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
  - (국가, 지자체) 아동의 권리, 보호, 안전, 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함, 차별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회) ▲ 부모 -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부모교육 근거 마련 및 강화
    - ▲ 기업 - 아동친화적인 기업경영 노력 필요 등
- ▶ 아동정책 추진체계
  -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 ▶ 각종 아동 권리실현 과제 구체화
  - ▲아동친화도시\*, ▲아동놀이 주간, 아동권리 주간 지정, ▲아동청원, ▲아동연기자, 키즈 유튜버 등 아동 수익보호제도 도입 등 근거규정 마련 검토
  - \* 각종 정책 추진시 아동정책영향평가 의무화하는 지역, 아동친화적인 제도 운영 중인 지역, 아동복지사업을 중앙정부 권고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지역 등을 지정하여, 인센티브 지원
- ▶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보시스템 구축 등 규정

## ② 아동정책 영향평가 전면 실시

- \*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수립·시행시 반영토록 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 ▶ 주요 아동계획 대상 아동정책 영향평가 실시

- '19~'20년은 영향평가 실시 초기로, 매뉴얼 지침 마련, 현장에 적합한 평가모델 마련을 위해 시범 평가 실시(전문평가, 자체평가로 구분\*)
  - 평가절차 기준, 평가결과 권고 후 관리방안 등을 고시로 제정, 본사업 기반 정비
    - \* ▲(전문평가) 심층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기관(전문평가단)에서 평가·컨설팅
    - ▲(자체평가) 사업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점검
- '21년 본사업 추진, 30여개 아동 관련 계획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아동 중심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육·교육, 문화, 건강·식품, 안전, 권리 등 분야로 나누어 매년 7~8여건씩 전문평가 추진, '24년 완료

### ▶ 지역 아동정책으로 영향평가 확대

- 연간 10건 이상 전문평가 실시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각종 정책에 아동 권리 등 아동 중심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중앙부처, 지자체 외 시·도 교육청 등도 영향평가 대상으로 검토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 체감도 향상 도모
-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 의무화 검토
  - \* (참고) 「성별영향평가법」은 법령 개정시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아동정책영향평가(전문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시 가점부여' 등 검토

### ③ 지역 아동복지사업 품질 제고

#### ▶ 아동복지사업 지역적 불균형 개선

\* ▲아동시설운영 ▲가정위탁양육 지원 ▲결식아동 급식사업 등

○ 지역편차\*가 크고 아동 관점에서 **균등한 지원이 중요한 사업**(예시: 가정위탁) 중심으로 최소 실시기준 제시

\* (예) ▲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은 위탁가정은 12.3%에 불과

▲ 지급 양육보조금도 천차만별(정부 20만원 권고 → 광주, 경기, 전북, 전남, 세종만 충족, 나머지는 12~15만원 수준 지원)

○ 지역 간 **차별적 지원이 지속·확대되는 사업**은 전문가협의체·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 구체적인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자체의 아동대비 재원투자 현황 정보공개, 평가 등을 통해 투자확대 유도 등

#### ▶ 시·도 단위 아동정책 조정·지원체계 마련

○ 중앙의 정책지원체계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었으나, 시·도 단위의 종합 조정 지원체계는 미비

\* 現 시도 전달체계는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17개 시도), 아동자립 전담기관(9개 시도)으로 나뉘어 있으며, 분절적 운영(▲(공공) 드림스타트, ▲(민간) 자립, 학대 등), 및 지역 간 품질 격차 발생

○ 지역단위 통합 정책지원체계\*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일부 시·도 대상 시범사업 추진 후 전체로 확산

\* 지역아동정책 수립, 아동권리보장 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

#### [예시] 시·도 아동정책 조정·지원 추진체계





# 02

## 아동참여, 의견표명권 보장 등 생활 속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1 현황

#### ▶ 아동은 권리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

- 아동이 바라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참여, 의견 청취가 중요하나, 우리의 사법 행정절차에는 이러한 권리 실현이 부족
  - \* (예) 현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 양육 면접교섭권 관련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13세 이상 자녀에 한정하여 진술 청취 의무화 → 자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 보호대상아동의 권리 사각지대 존재

- 등록되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존재하며, 보호아동도 보호주체의 친권이 제한되어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생
  - \* 실제 친권 행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아동명의로 여권, 핸드폰 신청 및 통장개설 제한 등
- 성인과 달리 아동은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원 등 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우범소년) 등 차별적 대우, 인권침해 요소 존재
  - \* 성인은 죄가 아닌 행위이나 소년은 소년원 등 처분 可 → 낙인화 범죄시하는 것으로 UN 등 폐지 권고

#### ▶ 새로운 형태의 아동 권리 침해 사례 발생

- 체벌 등 전통적인 문제 외에 뉴미디어(유튜브 등)에 대한 아동참여 증가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사생활 노출 등 아동인권 침해
  - \* (사례) 아동 유튜브 채널은 수익을 위해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자극적 행동 요구

### 2 정책 방향

#### 주요 관리 지표



- ▶ 아동 의견표명권 보장 : '23년까지 (가칭)아동청원 운영
- ▶ 아동중심 보호 : '22년까지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 ▶ 아동 노동권 : '20년까지 뉴미디어 참여 아동의 권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일상생활 속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실현

- 소송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 법제화, 각종 정책 결정시 아동 참여를 제도화하여 사법·행정절차상 아동권리 보장
- 공적 등록을 강화하여 보호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아동의 인권을 감안한 아동 중심 보호를 위해 우범소년 제도, 친권 제도 개선
- 부모와 가정 생활, 아동·청소년 노동 활동 등 일상에서 권리 보호 조치 강화

3 중점 추진과제

① 행정·사법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보장

▶ 정책 결정시 아동참여 제도화

- 온라인 상 아동 의견 표명 창구\*(가칭 ‘아동 청원’) 설치 추진
  - \* 아동 총회에서 아동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요청(사례 : 청와대 국민청원)
  - 아동 관련 사항에 대해 일정 수 이상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부처에서 답변, 필요시 아동정책 조정위 심의 등 검토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총회’ 결과 보고 의무화
  -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매년 아동총회 개최 및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정책반영을 위해 검토·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조정 항목에 추가
-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결과를 지역 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공유하는 등 정책 반영 기반 확대 추진(지자체 협의)
- 교육정책, 학교 운영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생회 법제화 등 참여권 제도화

▶ 사법절차상 아동의 의견표명권 강화

- 가사소송(이혼소송, 입양) 등 각종 사법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도입으로 진술 기회 보장 및 법률 지원
  - \* 아동 의견청취, 등 자녀복리를 제고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제출(18.3월)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
  - \*\* '91년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 규정,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19) 사항





###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 〈UN 아동권리위원회 제 5·6 차 최종권고 중 발췌: 「아동의 견해 존중」 부분〉

21. ... (중략) 위원회는 아동이 견해가 그들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며, 이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c) 발의된 가사소송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



### 예시: 의견표명권 주요 방향

구분	현황	개선 방향
가사 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세 이상에게만 부여</li> <li>• 일정 절차에서만 아동 의견 청취, 그 밖의 사항에서는 가정법원 재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연령과 상관없이 부여</li> <li>• 모든 절차에서 의견표명권 보장 등 검토</li> </ul>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경우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 외에 다른 아동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li> </ul>

○ 장기적으로 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개인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독일, 핀란드, 프랑스, 태국 등 37개국 기준)\* 가입 추진

\* 빈곤, 폭력, 경제적·성적 착취 등 아동권리 침해에 대해 국내법적 구제절차를 거친 후 아동 또는 그 대변인이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구제 청구권 보장

## ② 아동이 中心에 있는 아동 권리 보호

### ㉠ 모든 아동에 대한 공적 등록제도 도입

#### ○ 출생통보제 도입

-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미등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최소화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21년 국회 제출

#### ○ 보호(익명)출산제\* 병행 도입

\* 母가 일정한 상담을 전제로 자신(母)의 신원을 감춘 채 익명으로 출산·등록

- 출생통보제 도입시 의료기관 출생 회피 등 부작용 최소화 도모
- 독일·프랑스 등 해외사례 분석·평가하여 사전상담, 의료기관 이용, 아동의 친생모 정보공개 청구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 출생통보제와 함께 '20년 법률안 마련, '21년 국회 제출

### ㉡ 우범소년 제도\* 개선 추진

- \*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 판단을 거쳐 보호처분(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소년법 제4조제1항제3호)  
(해당 요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을 접하는 경우 등

#### ○ 우범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 예방, 인권 보호를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 국제 인권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도 개선 추진

\* 종합적인 소년정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논의

#### ○ 우범소년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비행 초기단계 아동·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 강화 등 소년법 개정 검토

\* 청소년 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 등을 통해 적절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

### ㉢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개선

#### ○ 미성년 후견제도\* 활성화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아동복지법 개정)

- \* (미성년 후견)子を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의무인 친권을 보충하여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공적제도 (부모가 친권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선임)

- ‘사실상 친권 공백상태’로 복리가 훼손\*되는 보호아동의 후견인 선임 지원을 위해 후견인 풀(pool) 구성, 전문교육, 후견활동 지원 등 실시

\* 친권자와 연락 두절시 → 전학, 통신계약, 통장개설, 의료동의, 여권발급 등 애로

**예시 : 미성년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 및 운영 방안**



① ‘미성년 공공후견인제도’ 근거를 「아동복지법」에 마련 → ② 아동권리보장원을 ‘공공후견인제도’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 → ③ 보호필요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할 수 있는 인력을 ‘공공후견인 풀(pool)’로 구성, 지속 교육 등 실시 → ④ 학대, 유기 등 보호필요아동 발생시 법원에서 신속하게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지원 (후견심판청구 관련 법률지원 강화, 후견인활동 비용 등 지원)

**○ 친권자 친권상실·제한 청구 사유 구체화 (아동복지법 개정)**

- 친권 불행사 등으로 보호아동 복리 훼손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 '16~'18년간 지자체장의 법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상실 신고 청구 건수는 총 2건에 불과

\*\* (구체화 예시) 아동복지법 제18조 개정사항(안) ▲(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개정)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위탁부모 시설장의 ‘후견인으로서 책임부담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될 경우, 보호아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有 → 후견인 선임 기피 → 친권제한 등으로 아동 일상생활에 불편·피해

**예시 : 제도적 개선방안(안)**



- ① 법원에서 친권행사 정지 후 → 공적 책임강화 차원에서 지자체를 ‘관청후견인’으로 선임 → 생활에 필요한 권한(법정대리권한)을 위탁부모에 위임(위탁), 아동이익을 위해 행사(지자체 관리·감독)
  - \* 보호아동 손해발생시 ▲ ‘관청후견인’ 1차적 책임, ▲위탁부모는 보호·양육과 관련한 통상적으로 기대 가능한 주의의무 위반시(고의, 중과실 존재) 손해배상에 연대책임
- ② ‘미성년 공공후견인제도’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경우 보호아동에 의한 손해발생시 국가, 지자체 등이 관련 분쟁에 대한 금전 보상 및 절차 지원

### ③ 아동권리 사각지대 해소

#### ▶ 일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

##### ○ 인터넷방송 키즈 콘텐츠 참여 아동 보호

-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 및 사후조치 체계 마련
- 아동연기자, 키즈 유튜버 등의 수익 일부를 공적으로 관리하여, 성인이 된 후 돌려주는 재정보호제도 도입
  - \* (美 쿠건법) 아동 배우등이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신탁계좌에 관리 후 성인이 되었을 때 되돌려 줌

##### ○ 대중매체·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출연 아동의 출연시간 제한, 언어 및 폭력에 노출 금지 등을 내용 포함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 \* 육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에서 방송출연 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활용 안내 및 모니터링
  - \* (주요 내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기본권 보장,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명시 등
- 산업안전기준 준수 및 적정임금 보상 등 특성화 고교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방안 마련(20)
  - \* (‘19년 감사원) 현장실습생 보수는 최저임금 기준의 45.6% 수준(538천원/45.6%는 미지급)에 불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미적용으로 안전사각지대
- 아동·청소년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현장지도 실시 및 근로권익 교육·권리 구제 지원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 기능 활성화 등

➔ 가정 생활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

○ ‘징계권’ (「민법」 제915조)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

- 친권 중 ‘징계권’이라는 용어가 가정에서 자녀를 부모의 권리 행사 대상으로 오인하거나 체벌을 정당화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
- ‘법제개선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법제화 위한 「민법」 개정 추진
  - \*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아동권의 향상 등을 위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20.5월)

○ 가정 내 아동권리 보장 환경 조성

- 아동발달과정 이해, 양육스트레스 관리,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양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 \* 주민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 부모가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요구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자녀의사에 반하여 아동 사생활을 SNS에 공유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아동기본법) 마련 검토
  - \* (프랑스) 자녀 사진 등을 포함하여 동의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배포하거나 SNS에 올리면 4만 5000유로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 윤리의식 함양, 인터넷 역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 \* 부모·자녀 인터넷·SNS이용 가이드라인, 온라인 콘텐츠 등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보급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교육자료

동화책



잡지



멀티미디어



교구



# 2.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01

## 놀이 확대와 균형 있는 교육으로 즐거움 속에서 미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 현황

#### ▶ 지나친 학업 중심 경쟁으로 아동 삶의 만족도가 낮음

- 과도한 경쟁으로 학업 스트레스 증가, 수면 여가시간 부족, 관계 결핍에 노출, 아동은 놀 권리, 쉼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

\* 놀이가 부족한 이유 (아동보고서 설문조사, '18.11월) : ① 과도한 학구열(50.8%)과 ②학생이 놀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34.6%)'

#### ▶ 미래 4차 산업시대는 새로운 교육, 발달 패러다임 요구

- 빠른 기술혁신으로 기존의 지식습득 교육은 한계, 인공지능으로 해결이 어렵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해결 역량이 요구

### 2 정책 방향

#### 주요 관리 지표

- ▷ (놀이·여가) '22년까지 아동·가족 우대제도 확충
- ▷ (교육) ▲'20년까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수립 ▲'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 ▶ 연령별 親 놀이환경 조성으로 즐거움 속 창의성·사회성 등 계발

- 문화·여가활동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설이용시 가격을 할인하는 아동·가족 우대제도를 확충하고, 아동친화도시\* 법제화 추진

\*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 준수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도시

- 놀이가 중요한 영유아,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놀이공간과 시간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놀이환경 조성 지원

#### ▶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적성을 꽃피우는 균형 잡힌 교육

-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교육 편성 등 추진

### 3 중점 추진과제

#### ① 아동에게 친숙한 놀이·여가 환경 조성

##### ▶ 아동 문화시설 등 이용 우대·할인 확대

###### ○ 아동 및 아동가족의 공공 체육·문화시설 등에 접근성을 높이기위해 이용 할인율\* 정비 및 혜택 확대

- 아동친화도시와 연계 및 지방정부·민간시설을 대상으로 MOU 체결 등을 통한 시설 이용시 다양한 우대제도 도입 추진

\* 일정연령 대상 상시 우대 또는 특정기간(예: 아동주간)에 무료 또는 할인을 제공 등

- 청소년 우대정책과 연계하여 아동발달 단계\*에 맞춰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연령, 시설 등을 분류하고 혜택 부여

\* (예) 초등학교 저학년: 신체활동, 호기심 충족을 위한 탐구활동 중심 /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문화감수성 제고 중심

##### ▶ 아동친화도시 제도화·확산

\* 현재 민간차원(UNICEF)에서 지정 중 / 45개 인증(20.7월 기준)

###### ○ 민간에서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를 법제화(아동기본법)하고, 체계적 사후관리 추진 (운영주체와 협의)

- 평가기준\* 유지여부 지속 관리, 아동친화도시로 개선·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이행여부 등 점검

\* 아동참여 제도화 여부, 지역특색 아동정책 추진현황, 놀이·여가사업 추진현황, 아동 안전조치,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수준 등

###### ○ 각종 지자체 공모사업(놀이 공모사업 등) 및 정부 평가시(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등) 가점, 우수사례 홍보 지원 등을 통해 확산 추진



## ② 지역, 연령 등 감안한 맞춤형 놀이 · 여가 지원

### ▶ 지역사회 놀이 지원체계 구축

#### ○ 놀이혁신위원회 운영 및 놀이 행동지침 수립

- 놀이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관계부처, 아동 · 시민단체, 놀이 전문가 등 중심으로 민관합동 위원회 구성 · 운영
- 놀이환경 조성 방안 · 절차, 우수 놀이 사례 등을 제시하는 구체적 행동지침(가이드라인) 수립 · 배포 ('21. 上)
- 지자체(시군구)는 놀이지침을 활용, 지역 여건을 고려한 「놀이혁신 행동계획」 수립

#### ○ 지역사회 주도 놀이 혁신 지원

- 국내외 중앙 · 지자체 · 민간 놀이 사업을 소개하고 우수 사례 포상 · 확산시키기 위한 놀이 컨퍼런스 개최('21. 上~)
-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각종 연계 가능 사업을 통해 지원

#### ○ 활동 부족, 인터넷 과몰입 문제 등 복합적 사회문제를 놀이로 해결하기 위한 아동발달 R&D 기획 및 시행('22)

- \* 지역사회,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이 있는 현장에서 R&D 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다년간 검증하고, 실제 효과성을 검증해 확산하는 형태로 기획
- 「사회문제 해결형 다년도 R&D\*」를 통해 바람직한 놀이 모형을 개발 · 확산
-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과 연관된 건강 · 안전 · 편익 등을 증진시키는 R&D

▶ 영유아·초등학교 놀이 시간과 공간 확보

○ 영유아 놀이시간 보장 및 놀이공간 확보

- 영유아 놀이 보장을 위해 바깥놀이, 또래 활동, 체험학습 등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놀이와 학습 중심의 운영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 안전을 고려하되 놀이가 활성화되도록 놀이환경 개선

○ 창의 활동 중심의 학교 공간 개선 및 시간 확보

- 학습, 돌봄, 놀이 등이 가능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을 통하여 아동중심의 학교 공간 마련
  - \* 휴게·놀이공간 조성, 바닥난방, 개수대 설치, 실내인테리어 등
- 교과 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놀이·활동 위주의 활동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 운영



놀이혁신 시범학교 운영 사례

구분	주요 내용	
놀이밥 공감학교 (강원도)	학교별 여건에 따라 1교시 시작 전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늘리는 등 노력을 통해 하루 40~100분의 놀이시간 확보	
놀이밥60+ 프로젝트 (전라북도)	중간놀이 시간 및 방과후 놀이과정 확대 등을 통해 60분 이상 놀이 시간 확보	

-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활동 중심 수업 활성화를 통해 아동에게 쉽고 놀이 제공 및 놀이 연계 교수 학습 지원

\* 교과별 놀이연계 수업자료 개발·보급, 저학년 교사 맞춤형 연수 실시('20. 下)

○ 부모, 교사 등 놀이지원자 인식 및 역량 강화

-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시 놀이에 대한 인식교육 확대
- 아동의 놀이권에 관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아동 특성을 고려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 문화예술 감수성, 소양 증진을 위해 **아동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동 인문학적 기반 조성을 위한 **독서 습관형성\*\*** 지원
  - \* ▲학교예술강사 지원, ▲유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 ▲꿈꾸는 예술터 등
  - \*\* ▲북스타트 사업(영·유아 및 양육자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 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성별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
  - \* ▲유아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등
  - \*\* ▲여학생 체육활동 지원, ▲수준별 교내스포츠클럽리그 운영 지원, ▲마을 및 지역 단위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지원 등
- 특수(장애) 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 등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관광 프로그램 지원 확대
  - \* 수혜인원 확대('20년 4,500여명 → '24년 6,500여명)
-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게임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
  - \* ▲게임문화 가족캠프 운영, ▲청소년 대상 게임 이해하기(리터러시) 교육 등

➔ **놀이·여가 활동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연계**

- 아동 문화·놀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과 적극 연계**
  - '20년 시범사업시 적용(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회적 기업 및 협동 조합을 포함하여 추진)

**아동 문화·놀이·여가와 사회적 경제 연계 필요성**



- ① 문화·놀이·여가 등 분야는 노동집약적 특성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여가 높아 아동 문화·놀이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연계시 효과가 큼
  - \* (취업유발 계수) ▲(문화예술) 22.9 vs ▲(산업평균) 12.9 (단위: 명/10억원)
- ② 또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시 사회적 경제 실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에 기여 가능

### ③ 지나친 학습 경쟁 완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 ▶ 초·중·고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 핵심개념 중심의 학습내용 적정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다양한 교육 활동 편성 등

##### ○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경감 추진

- 학원비 및 부당 광고행위 점검 강화, 입시 및 학교 교육 과정·평가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등 「공교육 정상화법」 이행관리 철저
- 과열된 고입경쟁 및 사교육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25~) 등 고교체제 개편 추진
- \* 행정, 재정지원(3년, 총 10억)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 지원

##### ○ 학생발달단계에 따른 양성평등교육 강화

-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목표·성취기준을 수립하고, 학생·교원용 양성평등 교육자료 개발·보급

#### ▶ 진로·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강화

##### ○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 \* 중학교 1~2학기 동안 소질·적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 학교·지역 간 운영 역량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및 교사 역량 강화 노력 지속

##### ○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

- \*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
- 그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추진계획 수립('20) 등 '25년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 지속

\*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 ▲'19년 연구·선도학교 지정·운영 → ▲'20년 마이스터고 우선 도입 → ▲'22년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제도 부분 도입 → ▲'25년 본격시행



# 02

##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아동 건강을 충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1 현황

#### ▶ 아동의 신체, 마음건강 위협 요인 확대

- 학습경쟁 심화, 통신·스마트기기 발달로 통제기술 증가, 미세먼지 빈발 등 아동의 신체 마음건강에 부정적 환경

#### ▶ 비만율, 스트레스 등 아동 건강관련 지표 악화

- 신체활동 시간부족,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따른 우울감, 스트레스 등이 원인

\* ▲(신체) 비만율 지속 증가 ('08. 11.2% → '17. 17.3%)

▲(마음) 스트레스 인지율 40.4%, 우울감 경험율 27.1%,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연령 하락 추세 등

### 2 정책 방향

#### 주요 관리 지표

- ▷ (건강한 습관·형성 관리) '24년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아동치과 주치의, ▲아토피, 천식 등 1차 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3대 시범사업) 본사업 추진

#### ▶ 예방 관리 강화 및 건강 취약아동(중증 소아환자, 장애아동) 맞춤형 관리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 조성을 위한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확대
-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지원 강화, 장애아동 소아전문 재활기관 확충·진료비 지원 강화 등

#### ▶ 기관간(학교·보건소·의료기관) 연계 및 인프라 확충으로 마음건강 집중관리

- 서비스연계 강화, 민간 심리상담 질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 인터넷, 스마트폰, 미세먼지 등 새로운 건강위해요인 관리 강화

- 건강한 이용습관 형성, 과의존 아동에게는 치유·상담 서비스 확대, 미세먼지 대응요령 교육 등 실시

### 3 중점 추진과제

#### ① 아동의 신체건강 관리 강화

##### ▶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생활위생 관리 강화

###### ○ 손씻기, 양치질,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실천을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홍보 강화

- 아동·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교육·캠페인 등 실시

\* 기개발 교육자료 정비·보완(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사항 추가), 사업협력체계 활용한 교육·홍보자료 배포, 초등생-학부모 UCC 제작 콘테스트 등

###### ○ 학교 등 아동 생활공간 내에 손씻기 및 양치 시설 개보수 여건 조성

-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등 신·개축 시 세면시설 설치 노력 확대

##### ▶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3대 시범사업 실시

###### ○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도입 추진

- 보건소에서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에게 모바일 앱으로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 '20~'21년간 시범사업 운영, 효과성 평가를 거쳐 전체 보건소로 확대 검토

###### ○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추진

-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 고학년은 가까운 치과의원 주치의 방문,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구강위생검사, 예방진료 등) 제공
- 사업 설계 및 시범사업('20~'23) 추진 후, 성과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 ○ 아동의 건강한 생활 및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 방지를 위해 천식, 아토피 등 만성질환은 가까운 일차 의료기관에서 집중 관리 추진

- 포괄적 환자관리 및 교육상담 등 질환별 서비스 모형 및 수가를 마련하여 '21년 시범사업 추진

\* 서비스 모형, 표준 프로토콜 개발 후, 시범사업안 마련('20), 시범사업 시행('21.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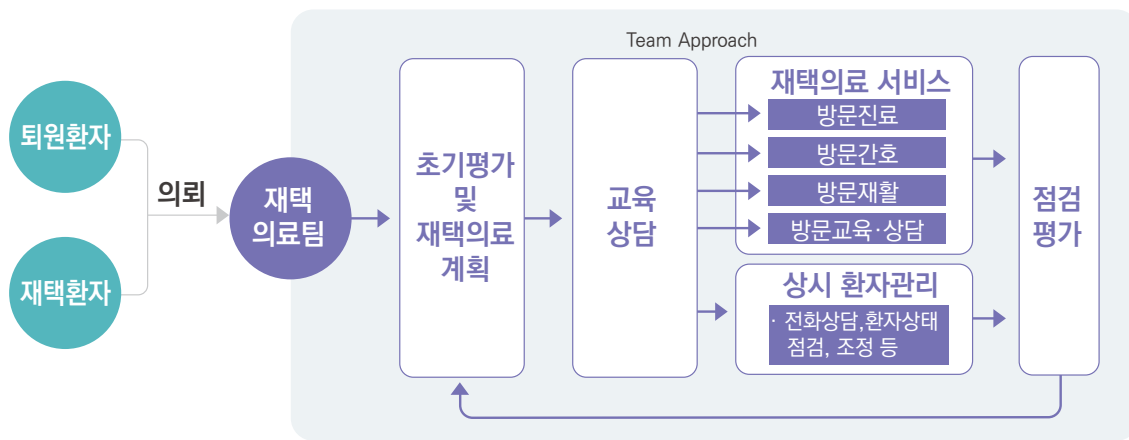
- 보건소,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등 지역 내 지원기관과 연계 서비스 제공, 성과평가 후 본사업 추진

➡ **건강 취약아동 치료·관리 및 부모 돌봄 지원 강화**

○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지원 강화**

- 현 시범사업 병원 2개소(서울대, 칠곡경북대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 「의료법」에 재택의료센터 설치 근거 명시\* 검토 및 재택의료 시범수가를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
  - \* 현재 중증소아 재택의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재택의료는 시범사업 단계
  - \*\* 의사, 간호사가 재택방문 의료시 수가 인상 등 검토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모형



○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 전문 재활의료기관 확충, 구강진료 강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등 의료접근성 강화**

-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통해 장애아동에 특화된 재활치료 모형 마련(‘20.10~)
  - \* 발달단계 및 질환을 고려한 환자평가, 전문재활팀이 생애주기별 치료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
-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22년까지 병원 3개소, 의원급 센터 6개소)\*을 통해 재활치료 접근성 제고 및 가정·학업과 치료 병행 지원
  - \* (병원) 충남권, 경남권, 전남권, (센터) 경북권,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1~2개소
- 장애인 진료 치과 병·의원 부족으로 치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인프라 강화\* 및 진료비 지원 강화 추진
  -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확대(‘18. 56 → ‘19. 61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18.9 → ‘19.13개소) 등

○ 부모의 자녀 돌봄지원 강화

- 중증소아환자 부모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 돌봄센터’\* 설립(20)
  - \* 부모가 24시간 동안 중증소아를 돌보고 있어 소진, 우울증,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중증소아를 단기(연 최대 3회, 1회 7일간) 맡길 수 있도록 함, 서울대병원 설치 예정
-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휴식지원프로그램 확충 등 가족지원프로그램 개선 추진

② 아동의 마음건강 관리 강화

▶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확충\*\*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질환 실태조사 추진

\*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사정 평가, ▲사례관리(전화, 사이버 상담, 가정방문 등), ▲진단검사 및 치료비 지원 등 치료연계

\*\* 현 169개소 →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239개소) 내 전담인력 단계적 확충

○ 아동 자살예방을 위해 심리부검 DB 구축,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한 발생 원인·수단 분석 등을 통해 근거기반 예방정책 강화

○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센터' 운영

- 발병 5년 이내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저소득층에 외래치료비 지원을 통해 퇴원 후 지속 치료 유도

○ 학교-지역사회 간 마음건강 지원체계 간 연계 활성화

- 상황별 최초 심리상담기관이 아동 수요에 맞는 상담서비스 제공 및 다른 기관 연계 지원

\* (現) 기관별 분절적 서비스 → (改) 최초 심리상담 기관에서 2차개입(고위험군), 3차 개입(치료필요)이 필요한지 등 고려하여 다른 기관 연계

구분	최초 상담기관(예시)	역할
가정폭력, 학대피해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제공, 다른 기관과 서비스 연계 등 주 사례관리 담당 역할 *(예) 가정폭력, 학대피해 등으로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을 원할 경우, 최초 심리상담(인지)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의료기관 방문 등 지원
또래, 가족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위(Wee)클래스 · 위(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질환진단 (정신건강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지자체 중심)를 통해 지역 내 이슈 공동 대응
  - \*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
-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제고를 통해 학생의 접근성 제고
  - \* (학생수 101명 이상 공립초교 배치율) ('19) 35.7% → ('24) 50% 이상으로 확대

### ▶ 민간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질·접근성 제고

#### ○ 민간 상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민간상담기관 확충, 심리상담 전문가 인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 민간 심리상담시설 관리체계, 전문가 양성 등 심리상담제도 입법 정책연구 추진
- 입법 완료 후, 학교에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칭) 우수 민간 마음건강 돌봄기관 기준\*’ 등 마련
  - \* (예) 임상심리사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고용

#### ○ 마음건강 서비스 바우처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바우처) 소득 기준 단계적 완화
  - \* (소득기준) ('19) 중위소득 120% 이하 → ('22) 중위소득 160% 이하
- 중장기적으로 민간 서비스 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지원금액 단계적 확대 검토 병행
  - \* (예시) ▲(현 바우처 지원금액) 회당 4.5~5만원 수준 vs  
▲(현 민간 아동 심리상담 프로그램) 회당 9~10만원 수준 → 민간 형성 가격의 7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검토

### ▶ 학생-교사 대상 마음건강 교육 강화

#### ○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기반의 마음건강 교육 실시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마음건강 교육 실시

#### ○ 교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연수 운영

- 대상자별(교장(감), 교사) 학생정서·행동발달 이해 및 상담 등 관리방안\*에 대한 맞춤형 연수 실시
  - \* 학생정서·행동발달의 이해, 학생상담 방법, 마음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방법 등

### ③ 새로운 건강 위협요인 대응 강화

#### ▶ 스마트폰 · 인터넷 등의 바른 사용 역량 강화

- 연령 등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아동-가족이 함께하는 각종 교육 ·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의존 예방 및 건강한 이용습관 형성

#### 연령 등 발달단계 고려 프로그램



- (영유아) 어린이집 · 유치원을 방문하여 눈높이 교육 실시
- (청소년) 기본 예방교육 외 체험중심, 토론형태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ICT 적성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 확산하여 미래 진로와 연결
  - 뉴스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뉴스미디어 활용능력 함양
  - \* (스마트폰 관련 프로그램) ▲레몬교실, ▲WOW 멘토링, ▲다함께 꿈 토크 등(뉴스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미디어 이해하기 교육 실시, ▲미디어교육 교재 및 수업모델 개발 · 보급 등

#### 아동-가족 체험 프로그램

-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문화체험 교육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대체할 여가경험 제공
  - \* (운영 프로그램) ▲유아 문화 체험교육, ▲지역기반 체험교육 등

- 스마트폰 · 인터넷 과의존 관련 다양한 치유 · 상담 서비스 및 민관협력 프로그램 \* 지속 운영

- \* ▲ 스마트쉼 토크콘서트(삼성SDS) : 교육현장으로 찾아가 진행하는 체험프로그램
- ▲ 스마트 힐링캠프(강원랜드) : 미술 · 심리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캠프프로그램

- 전문상담,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상담, 기숙치유 등 상황에 맞는 상담 프로그램 등 구성

- 건강검진 항목에 스마트폰 사용 등 사항 포함

- 영유아건강검진(총 7회)의 전자미디어(스마트폰 등) 노출에 대한 점검 횟수 확대(예 : 1회 → 3회) 등 추진 (21. 시행)

- \* 국가건강검진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검진 의사 매뉴얼,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개발(20년) →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개정 후 시행(21년)

### ④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 방안 마련

#### ○ 공기정화장치 운용가이드라인 마련 및 미세먼지 저감화

- 공기정화장치(공기정화설비)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자 지정, 필터교체·세척, 청소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실내 바닥·창문·창틀청소 실시, 노후 창문 교체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 병행

#### ○ 미세먼지 대응 교육 강화

- 미세먼지 빈발 시기(겨울철, 신학기 개학 전후)에 학생 대상 미세먼지 위험성 및 행동요령 안내
- 개학 전후(3월, 9월) 각급 학교별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교육(온라인·집체)을 통해 대응역량 함양

### ④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사용 억제

#### ○ 담배 판매자 등 단속 강화

- 아동 대상 담배판매 업소 및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위조신분증 사용 담배구입 아동에 대해 친권자,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선도 보호조치 활성화

#### ○ 전자담배 등을 포함하여 금연상담 및 클리닉 운영, **소 연령층 아동대상으로 전자 담배 유해성 교육 및 홍보 강화**



# 03

## 폭력과 사고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1 현황

#### ▶ 뉴 미디어 확산으로 유해매체 노출\* 등 안전 위협요인 확산

\* (18 유해매체 노출경험) ▲성인영상물 39.4% ▲성인간행물 23.3% ▲성인용게임 17.8% 등

#### ▶ 안전은 아동의 신체-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

\*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국민청원 발생」에 20만이상 국민동의를 많음(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 ▶ 제도적 노력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 예방·대응체계 강화 필요

\* ▲남양주 3개월 여아 사망(19.4.19) ▲광주 만12세 의붓딸 사망사건(19.4.27)

▲인천 계부에 의한 만5세 사망(19.9.26) ▲인천 미추홀구 만3세 사망사건(19.11.15) 등

### 2 정책 방향

#### 주요 관리 지표

- ▷ '21년까지 '유아 성행동 문제' 발생시 아동관점 대응 강화를 위한 기관간 연계체계 마련
- ▷ '21년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24년 시행
- ▷ '20년부터 위기아동 사전발굴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학대 사망사례분석팀 운영

#### ▶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신종 폭력 안전 이슈 관리 강화

- 성인의 아동성범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검토, 영유아기 성문제 행동은 아동 중심, 보호관점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 ▶ 교통·식품·공산품 안전, 학교폭력 등 아동의 일상 속 안전 관리 강화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아파트 단지, 통학버스 등 어린이 교통위험 노출이 쉬운 영역에 대한 집중 안전 강화 추진

#### ▶ 학대 위기아동 사전 발굴시스템 고도화, 대응체계 개선

- 사전발굴 정보(가정폭력 등) 재정비, 과학적 사례분석 등으로 학대아동 조기발견, 즉각분리 조치, 심리치료·처벌 등 사후관리 강화

### 3] 중점 추진과제

#### ① 아동 성범죄 및 '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 강화

##### ▶ 아동 대상 신종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추진

###### ○ 온라인 그루밍 예방,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온라인 그루밍 법적 정의, 처벌 규정 등 신설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시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 범죄로 규정할 것을 권고 (19.10월)

국가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률 존재	온라인 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나려는 의도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과 무관한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성인 음란물을 보여 주는 행위
대한민국	×	×	×	×	○
미국	○	○	○	○	○
인도	○	○	○	○	○
중국	×	×	×	×	○

###### ○ 잠입수사 도입 및 온라인 성착취 가능성 높은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수사관을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 실시
- 불건전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유해매체물 지정', '성인 인증절차 도입', '집중단속' 등 추진

##### ▶ '유아 성행동 문제' 발생시 아동관점 대응체계 강화

\* (사례) 성남시 어린이집 재원 아동간 성관련 사건 발생

###### ○ 아동중심, 아동보호 관점에 따라 현장에서 대응하도록 매뉴얼 마련(20.~)



(참고 : 미국사례) 유아간 성관련 사건 발생시 기본원칙 및 절차

- ① (즉시 중단) 관련 행위가 중단되도록 조치 → ② (아동입장에서 신중한 접근) 죄책감, 부끄러움 등으로 위축된 아동 입장 고려하여 접근 → ③ (지원서비스 제공) 아동, 가족에 대한 심리 서비스 제공 → ④ (공식 보고) 성폭력 담당기관에 공식 보고, 민사상 절차 등 안내

○ 조사-상담-치료 등을 포괄한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마련(20.~)

- 피해 발생시, 조사-상담-중재-보호-치료-사후관리 등이 연계되도록 지자체 대응체계를 마련·운영하고, 기관별 기능 및 역할 정립

\*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기관 간 협업

○ 아동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병행 추진

- 어린이집, 유치원에 유아 성교육 전담교사 지정, 아동 대상 성교육 콘텐츠 보급 등 추진

② 교통, 학교, 식품·공산품 등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대폭 개선 및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 전국 보호구역\*에 신호등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22), 보호구역 식별 용이성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보완 등 표준모델 개선

\* 단속장비 설치 부적합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 확충

- 안전무시 관행 근절 위한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 현재는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대 지역에 대하여 시행 중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전국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통행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기준 신설('20. 교통안전법령 개정) 및 지자체 이행사항 점검·관리('21~)

\* 단지 내 도로 종류, 범위, 교통안전시설 종류, 자동차 통행방법, 안전시설·설치 관리기준 등 규정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21년 개정, '24년 시행)

-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시설을 확대

\* (현행)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 → (변경) 11개 법률에 규정된 18종 시설

- 안전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 의무화
  - \* ▲(교육대상) 운전자, 운전자 → 동승보호자 추가 확대▲(운행기록 작성) 작성 의무화, 매 분기 시설감독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 법규위반 처벌수준 상향으로 통학버스 안전의무 준수 실효성 강화
  - \* (기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상향)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학부모안심유치원」 확대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 유치원 구성원, 학부모 등이 협력하여 유아의 건강·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 개선하는 모델인 「학부모안심유치원」 전국 확대
  - \* ('18 ~ '19년) 학부모안심유치원 시범 운영 → ('20년) 학부모안심유치원 전국 확대

학부모안심유치원 도입 전후 비교

학부모안심유치원 도입 전(前)	학부모안심유치원 도입 후(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관리를 기능적 구성에 중점</li> <li>* 예: 흥미영역으로 교실이 구성이 되었는가?</li> <li>▶ 건강·안전 분야에 대한 유아의 적절한 지도 여부 확인 중심의 유치원 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교육 환경 구성과 활용을 포함하여 종합적 유치원안전 관리에 중점</li> <li>▶ 건강·안전 관련 유아 지도 및 유치원에서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 사항 강화</li> </ul>

○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및 교육

- 어린이집 개보수, 장비비 지원 및 안전예방 컨설팅\* 확대
  -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업으로 소방 및 통학차량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어린이집 안전 점검 및 컨설팅 제공, 안전물품 등 지원('20년 기준 400개소 대상)
- 미세먼지를 포함한 실내 공기 질 관리, 어린이 통학차량, 급식, 건강, 위생 등 지속적인 안전 점검
  - \* 하절기(6~7월), 동절기(11~12월) 각각 전체 어린이집 15% 이상 실시
- 보육교직원 대상 예방·대응 교육 및 영유아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 어린이 주요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 (환경보건법상 정의)

#### ○ 유해화학물질 노출 감소를 위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전면개정안 마련(20.12월)

\*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아동의 환경성 질환 증가 중(9세 이하 어린이의 비율 : 알레르기 비염(21.1%), 천식(37.9%), 아토피피부염(48.7%))

-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에 포함되는 납 함유량 기준\* 강화, 공간 내 미세먼지 검출 기준 마련 등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

\* 사용금지 또는 100ppm 이하로 설정 검토

### ▶ 어린이 먹거리 안전 · 위생관리 강화

#### ○ 소규모 어린이집 · 유치원에 대한 급식 위생 · 영양관리 지원, 학교 및 급식 공급업체 집중 위생 점검\*

\* 위생취약학교(기숙형 학교, 1일 2식제공 학교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식재료 공급업체 등 중점관리

- 어린이집 · 유치원 영양사 배치 강화, 보존식 의무대상 확대, HACCP 수준 관리기준 적용 (집단급식소) 등 급식 위생 · 안전관리 강화

① (영양사 배치강화)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100인미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 · 영양관리 지원 역할)’ 등록 확대, 소규모 사립유치원(100인미만)은 교육(지원)청 지원, ▲공동영양사 제도 개선(100인이상 시설은 영양사 1인이 5개시설까지 담당 가능 → 2개로 축소, 200인이상 시설은 단독 배치)

② (보존식 보관 확대 · 강화) ▲50인미만 유치원 · 어린이집 보관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상향(50→300만원),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시 처벌규정 신설

③ (전수점검) ▲유치원 ·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전수점검, ▲식중독 원인규명을 제고를 위한 ‘식중독 표준 업무처리 지침’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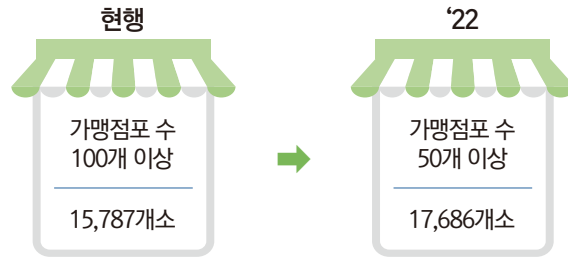
④ (제도개선) ▲식재료 관리 내실화(HACCP 수준 관리, 어린이집 식재료 안심구매 활성화 등) ▲정보공개 확대(SNS 안내, 운영위원회 급식 · 위생관리 현황 보고 등), ▲사고발생시 관계부처 합동 협업체계 구축



○ 고열량·저영양, 고카페인 식품 정보공개 및 광고 모니터링\*, 어린이 식품조리·판매업소 (프랜차이즈)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확대

\* 17~19시 TV 광고 제한, 어린이 방송프로그램시 중간광고 금지 등

\*\* ▲(현행) 가맹점포 수 100개이상 업체(15,787개소) → ▲('22) 50개이상(17,686개소)



▶ 아동 사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최근 3년간 전체 안전사고(212,031건) 중 34%가 어린이 안전사고에 해당,

특히 '18년 어린이 안전사고 24,097건 중 24.7%가 어린이 제품(공산품)과 관련(한국소비자원)

○ 제품 시장 유통 前(인증제도)·後(리콜제도)를 기준으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 실시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시행 중)

\* (출시 前) KC 인증제도 운영(어린이 제품 모두, 생활제품 일부 등)

(출시 後) 사고조사,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한 위해제품 리콜조치 이행

KC 인증제도,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3단계로 관리



- 제품 안전기준 지속 정비, 사업자 컨설팅(연 25~30개 업체) 등 지원 및 유통제품 시장감시(소비자로 구성된 시장감시단(120여명) 운영) 추진
- 어린이제품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인증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 ④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 모든 초·중·고에서 수업 중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업시수 편성 권장
  - \* 어울림/사이버어울림 운영학교: ('19) 4,506교 → ('20) 모든 초·중·고
- 교과수업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도록 교육과정 연계 확대\*
  - \* ('19) 국어·도덕·사회 既 개발 → ('20) 영어·체육·기술·가정 → ('21) 진로·한문

#### ○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 대응 강화

-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초기 대응 강화방안 마련, 지능형 CCTV 보급 추진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조기 감지 지원
- '학교장 자체 해결제', '관계회복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하여 학교의 교육적 대응역량 강화
  - \*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한 컨설팅, 법률상담 등 지원, ▲관계회복 프로그램 활용안내서 개발·보급 등
- 매뉴얼 개발·보급, 연수 제공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지원으로 사안 처리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 ○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체계 강화

- 피해학생 특성·상황에 따른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확대\* 추진 및 학교폭력 사례분석\*\*을 통한 대응절차 개선 검토
  - \* 피해학생 지원기관 수(목표): ('19) 48개소 → ('20) 52개소 → ('22) 56개소 → ('24) 60개소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심의 사안에 대한 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보완 등
- 지역별 교육복지센터, 위(Wee)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연계하여 보호자와 가족 대상 찾아가는 상담·사후관리 강화
  - \* 청소년 안전망(여가부), 정신건강보건의센터(복지부), 청소년경찰학교(경찰청) 등

○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 학교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조치 1~3호\*를 이행한 경우, 동일 학교급에서 1회에 한해 학생부 미기재(‘20.3.1 시행)

\* (가해학생 조치 1~3호)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 가해학생의 학교급, 가해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특별교육기관 운영 가이드 개발(~’20.9)

➔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강화

○ 유아, 청소년 등 아동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시로 예방 및 대처역량 제고

\* (유아) 사이버폭력 예방 등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인형극 등 ‘바른인터넷 유아학교’ 운영(청소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강사를 파견하여 디지털 역기능 등 예방교육 실시

③ 정보연계-협력 등을 통한 아동학대 근절

➔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 위기아동 관찰 및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지자체-학교 간 정보공유,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 구축

○ 부처 간 정보연계 강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편으로 위기아동예측률 제고 및 학대 아동 관련 빅데이터 분석·제공 추진

\* ▲가정폭력 정보(경찰청)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복지부) 자동연계, ▲이사시 정보누수 방지를 위한 자동 알람 시스템 구축, ▲드림스타트(복지부) 종료 후 정보를 청소년안전망(여가부)에 연계 추진 등

➔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 보호시설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아동학대 대응역량 제고 및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강화 기반 마련

\* ▲(아보전) ‘22년까지 20개소 추가 확충(’20. 71개소), ▲(쉼터) ‘21년까지 10개소 내외 증설, ▲(처우개선) 아보전,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 학대전담공무원 조기배치(’22년 → ’21년) 및 전문성 강화, 24시간 대응체제 마련 등 학대조사 공공화 전면 시행

### ➔ 친권 제한·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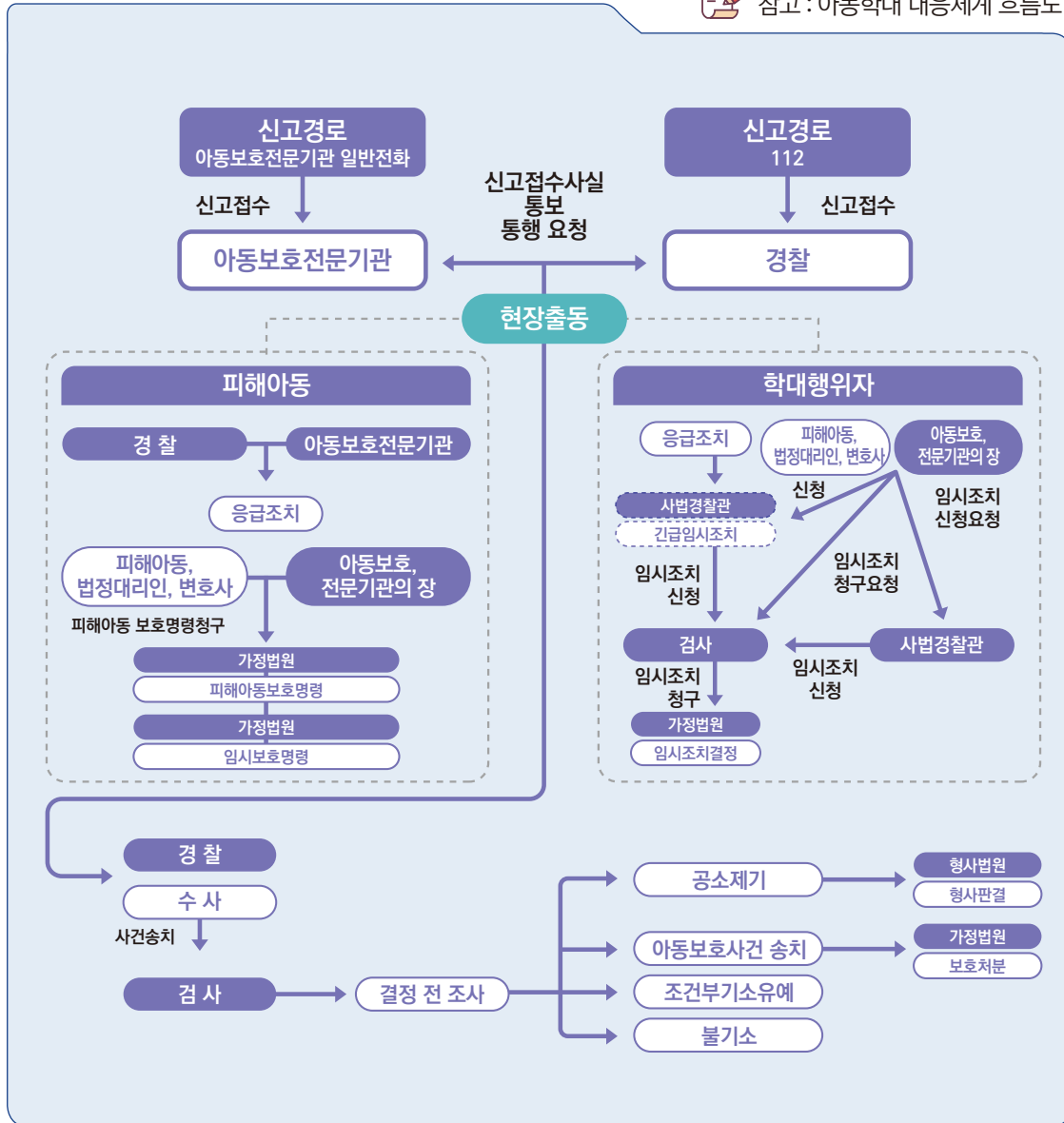
- 친권자 징계권 조항 개정, 보호대상아동 친권보충제도 등 개선
- 즉각 분리제도\* 도입(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원가정 보호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피해 아동의 보호 한계 극복

\*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로 분리·보호(현 ‘응급조치’에 따른 72시간 분리기준 보다 완화)

### ➔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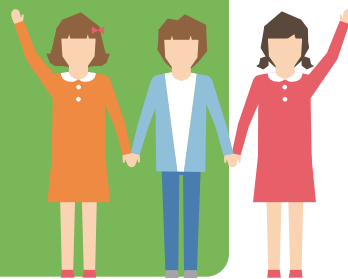
- (예방) 부모, 신고의무자, 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로 사회적 인식 제고,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 TF 구성·운영
  - (발굴) 신고의무자 적극 신고 유도(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현실화, 신고자 보호 강화 등), 가정방문 등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체제 강화
  - (초기대응) 경찰-학대공무원 현장조사 출입장소\* 범위 및 동행출동 확대
- \* (現)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 (改)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
- (보호·지원) 경제적(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대상 자립수당 신설 등)·심리·회복(거점 아보전에 심리치료센터 확충, 진로지원 등)지원 확대 추진
  - (재발방지) 사례관리 강제성 부여(거부시 과태료), 주요 사망사건에 대한 분석(전담조직 구성·운영 등)을 통한 정책대응 강화
  - (추진체계) 중앙(아동정책실무위)-지자체(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에서현장관리 점검·보완

참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흐름도



# 3.

##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 01

## 공적 보호체계를 완비하고, 돌봄 확충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1 현황

#### ▶ 민간기관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 아동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최초 의뢰된 민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호방식이 임의로 결정  
→ 지자체 인력을 확충하여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19.5월)

#### ▶ 아동을 위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가 중요하나, 충분치 못한 상황

\* 요보호아동의 가정형 보호(54%) 비중이 아동양육시설 보호(46%) 보다 높으나,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는 친인척 등 개인 역량에 의존, 낮은 원가정 복귀율 등 한계

#### ▶ 돌봄의 공공성, 품질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지속

### 2 정책 방향

#### 주요 관리 지표

- ▶ '22년까지 공적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구축 완료
- ▶ '21년까지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국제입양법 제정

#### ▶ '22년까지 중앙- 시도- 시군구 단위까지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 완료\*

\* 인력배치 완료, 법적근거 마련, 전문인력 교육 등

#### ▶ 전문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및 아동중심 보호 서비스\* 강화

\* 영아 · 학대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 입양사후서비스, 입양인 친가족 찾기, 실종아동 가족지원 확대 등

#### ▶ 영유아-초등-청소년 돌봄서비스 양적 · 질적 수준 제고

\* (양적) 공공보육이용률 목표치 재설정(예 : '22년 40% → '21년 40%)  
(질적) 등 · 하원 도우미, 돌봄교사 유형 다양화 및 인력확충 등으로 아동 · 부모 만족도 제고 등

### 3 중점 추진과제

#### ① 公共 중심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구축

##### ▶ 공공 인력확충 및 기관별 업무 전문화

-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20.10~)
  - 아동보호전담 민간전문인력 배치 근거 마련,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20)
    - \* '20년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전담인력 배치 → '22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아동보호체계 전담인력배치 완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사법처리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20)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보호제공, 가정복귀결정 등을 公的으로 결정·수행하고,
  -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 조사업무 수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개편 (~'22)

##### ▶ 전담인력 전문성 등 역량 강화

- 아동권리보장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간 협력을 토대로 아동보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운영('21)
- 아동학대 업무 종사자 현장 대응역량 강화
  - 아동학대 관련 법령, 판례, 현장조사·사례관리 전문지식 등 교육(법무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까지 확대, 교육내용 구체화 등)

#### ② 입양·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 활성화

##### ▶ 입양 전 과정에서 공적책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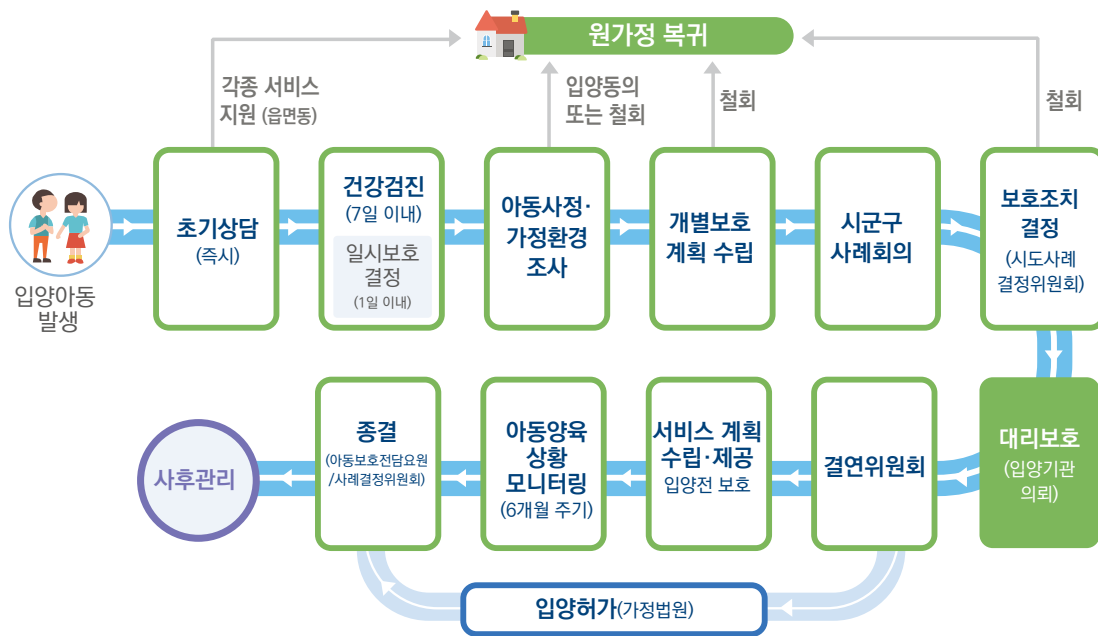
- 입양 전 과정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양체계 구축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21)
- 해외입양의 경우 '나가는 입양' 뿐 아니라 '들어오는 입양' 까지 포괄하는 국제입양법 제정 ('21)
  - \* UN 아동권리위원회 국제입양법 제정 권고('19.9)



-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 준비 및 아동 적응 지원을 위해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 아동중심 결연 강화**를 위한 **결연위원회 도입 검토**
- 아동·양부모 조사 등 입양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의 지원방식 개선**

\* 현재 입양기관은 수수료(국내입양 270만원, 해외입양 2~3만불)를 통해 운영

### 공적책임 강화 하 입양아동 발생시 처리절차



### 가정형 위탁 중심 아동보호 활성화

- 친족중심 가정위탁\*을 탈피하고 가정형 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해 예비 일반위탁 부모 추가 양성(약 500여명) 추진

\* 「민법」에 의한 8촌 이내 친인척가정 보호가 전체 가정위탁(1만111명)의 91.8%(10,198명) ('18년)

\*\* 가정위탁보호율 목표치 : 25%('20년) → 28%('21년) → 31%('22년) → 34%('23년) → 37%('24년)

- 신규위탁가정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양육보조금 연령대별 차등 지원 등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확대

\* ▲(아동용품구입비) (현) 기준없음(지자체 상이) → (개선) 100만원 이상

▲(양육보조금) (현) 20만원 → (개선) 0~6세 30만원 / 7~12세 40만원 / 13세 이상 50만원

○ 영아, 학대피해 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제도 법제화 및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강화

- \* ▲(전문아동보호비) (현) 매월 40만원 이상 → (개선) 100만원 이상
- ▲(시범사업 결과) 대구, 전북, 충북, 부산 시범운영 → 정서불안, 문제행동 감소 등 긍정적 변화 확인

④ 아동양육시설 지원방식 개선

○ 단순 시설보호에서 필요한 유형별로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원

- 보호아동의 자립 성장 지원을 위해 12세 이상 아동에게 1인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 사업 추진
  - ADHD 등 보호가 더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시설 및 그룹홈에 대한 인력기준 합리화
- 아동 양육시설이 치료지원형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 ▲아동 보호기간(단·중·장기), 욕구 수준·유형별 서비스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시설 기능 차별화,
  - ▲아동 특성별(질환, 연령, 위기수준 등) 시설 기능 전환 방안 등

③ 입양 사후서비스 및 실종아동 찾기·지원 확대

④ 입양 사후서비스 개선 및 친가족 찾기 지원 확대

-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심리상담서비스 도입 등 입양가정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대상 확대 추진(만 17세 미만→만 18세 미만, ‘21년)
  - 위기 입양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 도입(‘21) 및 反 편견 입양교육 확대
- 입양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친부모 찾기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당사자 동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입양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공개 청구권자 범위, 친생부모 동의 확인절차)
  - 입양인·친생부모 유전정보 DB 구축 및 실종아동정보시스템과 연계

④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지원 확대

-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대상별\* 매뉴얼 및 실종아동 예방 영상 제작, 집중 홍보 기간(실종아동의 날(5.25) 전·후)을 마련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
  - \* 아동(6세~11세, 12세~18세), 지적장애인, 성인(종사자, 부모)
- 실종아동 정보 전자등록 및 연계
  - 무연고 아동카드 DB 구축(종이→DB화) 및 여러 DB\* 간 대조를 통해 장기 실종아동 찾기의 효과성 제고(~ ‘21)

\* ▲아동카드 DB(83,430여명) ▲신상카드 DB(18,856여명) ▲프로파일링시스템 내 실종신고미해제아동 DB(550여명) ▲사례관리대상자 DB(154여명)

○ **맞춤형 실종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심리상담 · 치료 프로그램 권역별 운영,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사례관리 미등록자 등록 권유 · 안내 등 추진(~21)

**④ 아동복지정보 연계 및 통합**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분산된 아동 관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 · 연계하고 ▲공통된 DB를 구축하여 일원화된 아동 정보관리체계 마련('22)

\* 현재 아동복지 관련 시스템은 ▲사회보장, ▲아동학대, ▲입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드림스타트, ▲자립지원 등 10여종으로 분산 구축

- 아동 개인을 중심으로 급여,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등 이력관리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민 · 관 협업 기반 조성

○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복지 지원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아동 및 원가정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호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 성장주기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연계**

○ 위기 아동에 대한 정보 분절성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통합정보시스템과 정부 부처간 유관 시스템 간 연계 추진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 간 연계로 아동지원체계(드림스타트 등) 종료 아동 이 위기청소년 해당시 지속 서비스 제공

\* 청소년안전망 종합상담시스템,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산망 등 위기청소년 관련 시스템 통합 · 연계 추진 중('20년 BPR/ISP 수립)

- 중장기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하여 학교 내, 학교 밖, 지역사회 등 위기아동의 주 활동 공간 전반에 걸친 보호정보 공유체계 마련

○ 효과적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를 위해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 업무협의체 구성 · 운영

## ⑤ 아동 돌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가정-지역사회 돌봄지원 강화

#### ○ '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 달성\*

\* '21년 목표 달성 후 중장기 목표 재설정 (예: '23년까지 50% 달성)

- 기존 신축 방식 외 매입,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등 확충 방식 다양화

- 범부처 협력을 통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민관협력\*\*(하나금융 MOU)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복합화(신축)) 국고보조율 50% → 60%로 인상('20~'22), '20년 29개소

\*\* (민관협력) '18~'20년까지 90개소에 총 1,000억원 사업비 지원, '18년 268억원(24개소), '19년 242억원(22개소) 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국공립어린이집 등 신축 지원('20. 그린뉴딜, 30개소, '21~'25 매년 82개소)

#### ○ 가정 내 아이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공동육아 지원 확대

- 신청 절차 개선, 미스매칭 해소 등 편의성 제고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확대('19년 10만명) 도모

\*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정보 접근성 강화, 체계적인 대기 관리 등

-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검사 도입, 이용자 만족도 조사, 현장 사례 중심 교육 등으로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 향상

- 부모·자녀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활성화 추진

###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서비스 질 제고

#### ○ 방과 후 초등돌봄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지역사회 내 방과 후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 '22년까지 약 53만명의 초등학생에게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 온종일 돌봄 선도모델 구축,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학교-지자체 협업 강화 등 지역사회 맞춤형 초등돌봄체계 구축

\* 국가·지자체 책무 명시하는 근거법 제정 추진, 공통 업무매뉴얼 개발, 워크숍 개최 등 추진하여 지역 간 편차 완화

○ **다함께돌봄센터 대폭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다함께돌봄센터를 '22년까지 약 1,800개소 확충하여 약 9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신축 아파트 내 설치 의무화, 생활 SOC 복합화 선정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추진

- 등·하원 지원, 운영시간 확대, 인력 확충 등 센터운영을 내실화하여 이용 아동·학부모 만족도 제고

\* (예) ▲대학생을 활용한 등하원도우미 검토, ▲돌봄교사 유형 다양화 검토(은퇴 간호인력을 활용, 건강을 관리하는 돌봄교사로 채용) 등

- 정부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긴밀히 연계하여 각 돌봄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련 부처간 돌봄협의체 구성·운영

\* (행안부)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농식품부)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문체부) 체육·예술강사 프로그램 활동 지원 등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활성화**

\*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등의 청소년(초4~중3)  
(지원내용) 급식, 상담,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등 지원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학업·체험활동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인프라 지속적 확충 추진

\* (예시) ('19) 280개소 → ('20) 310개소 → ('21) 360개소 → ('22) 450개소

- 제4차 산업혁명 도래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량개발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전환

\* 진로체험형 특화프로그램 전국 확대: ('19년) 9개소 → ('20년) 전국

## ⑥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 ▶ 개정 유치원 3법 이행관리 강화

#### 유치원 3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안 주요 내용
사립학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유치원 원장 겸임금지</li> <li>•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함</li> </ul>
유아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신설</li> <li>• ‘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li> </ul>
학교급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법 적용 범위에 유치원 급식 포함</li> </ul>

### ▶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개인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등 형태로 전환

-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관리, 감시 등 의견 표명가능하고 회계 투명성, 운영 민주성, 학부모 신뢰도 향상



## 02

# 빈곤과 다양한 배경이 굴레가 되지 않도록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1 현황

#### ① 경제·사회적 격차 고착화로 빈곤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부정적 우려

- 빈곤아동은 학업성적 저하, 우울·불안 및 비행 성향 증가 우려
- 빈곤은 물질, 관계 등 측면에서 절대적·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성인기까지 부정적 영향 및 빈곤 대물림

#### ② 글로벌화에 따른 인적교류 확대로 다문화 가족, 이주아동 등 증가\*

\* (다문화 가구) ('15) 29.9만(가구원 88.8만명) → ('18) 33.5만 가구(가구원 100.9만명)

- 상호 관용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전락 우려

\* 다른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성인이 된 후에 사회에 부정적 영향 가능

### 2 정책 방향

#### 주요 관리 지표

- ▷ 빈곤 아동가구의 주거지원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확대
- ▷ 한부모, 이주민, 장애아동 양육 가정 지원 강화

#### ① 보호대상 및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公的 지원 확대

- 빈곤 아동가구에 대한 공공 주거지원 확대 및 보호종료 이후 아동의 빈곤의 악순환 예방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 ② 다양한 배경 아동이 함께 존중·이해하며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아동 등에게 필수적인 의료·교육 등 서비스 지원 강화 및 상호 수용성 제고와 인식 개선 교육 병행

### 3 중점 추진과제

#### ①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 확보

##### ▶ 아동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 아동 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20~)

- 자녀 수에 따라 적정 방 개수 · 면적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토록 '다자녀가구 전용 공급유형' 신설하여 별도 공급 및 물량 확대

\* (현재)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등)가 아닌 유자녀 가구는 '저소득 일반가구'에 포함 → 자녀 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다자녀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더라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발생

-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 하여 아동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확대

\* (현재) 국민임대주택 총 공급물량의 10%를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에게 우선공급

###### ○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19.10월)」 중간평가 및 개선과제 발굴(22)

\* (주요내용) ▲무주택 · 저소득 다자녀(2자녀) 1.1만가구, ▲보호종료아동 등 0.6만가구, ▲무주택 · 저소득 비주택 1.3만 가구 등 총 3만 가구에게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강화

- 아동가구 특성\* 을 고려하여 빈곤 아동가구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관련 부처 · 전문가 협의체 운영

\* 아동양육가구는 아동 연령 증가, 다른 성별 자녀 출생 등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많은 방 수, 보다 넓은 면적 필요

#### 개선 검토과제 예시



① 아동가구(다자녀)의 공공임대주택(매입 · 전세임대 등) 특별공급 물량 확대, 건설임대주택 배정시 아동주거 빈곤가구 지원 우대\* 등 검토

\* (예) 아동양육가구에 대해 가점 부여(우선순위 상향) 등

② 아동가구 주거구입 및 전 ·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확대, 금리우대 등 검토

\* '18.9월, '19.12월 주택기금 대출 관련 유자녀 가구 우대금리제도 개선, 대출한도 등 우대혜택 시행



➔ **지역사회 단위의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질적 개선 추진**

- 사전예방 역할 강화 · 지원 확대를 위한 드림스타트 발전방안 마련

\* (예시) ▲0~2세 지원을 확대, ▲지속 사례관리를 요하는 연령도래 아동에 대한 청소년안전망 연계 강화, ▲지역별 지리적 접근성, 취약아동 밀집도를 반영한 지역사무소 설치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슈퍼비전 체계 구축 및 사업 점검 · 평가 개편

\* (예시) ▲1드림-1슈퍼바이저 체계 및 슈퍼비전 상시 전달체계 구축 추진, ▲사례관리 정성지표 확대 등 지표 수정 및 평가과제 재설계

○ **비행 초기단계 아동청소년 보호강화를 위해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적극적 개입\* 등 역할 강화**

\*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 대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비행예방교육 실시 등

➔ **보호종료아동 대상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 확충**

○ **중장기적으로 아동복지법령상 자립수당 지원기간\* 현실화 및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등 주거지원 강화**

\* 보호조치 종료, 또는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보호종료 아동 공공주거서비스 이용률 ('18) 33.4% ('19) 37.1%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입주지원 등

○ **보호종료아동의 심리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

○ **찾아가는 자립교육 확대, 사이버 교육 등 추진,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취업정보 등 자립정보 제공 강화**

○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연락체계 정비 및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 데이터 확보 등 자립지원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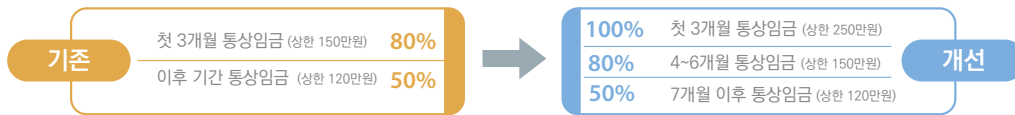
## ② 다양한 배경의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④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건강·주거 등 자녀양육 지원 강화

\* ▲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시설입소 미혼모 임신·출산, 자녀 질병 등 건강관리 강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지원 등

####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한부모 근로자 육아 지원 강화



### ④ (이주배경 아동) 서비스 다양화 및 의료 등 필수 서비스 지원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가정에 필요 서비스 지원

#### ○ 다문화 가족 등 이주배경 아동의 입국초기 적응 서비스\* 지원, 감수성 증진프로그램을 통한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 정서안정 및 이중언어 역량 강화,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 확대, 입국초기 한국어 교육, 대학생 멘토링 운영으로 학교적응 지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종합지원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시범도시’ (2개 지역/’20~’21) 운영

\* 지역기관 민·관·학 협업체 구성·운영, 한국어 교육(레인보우스쿨), 급식 지원, 지역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 ○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

- 교육처럼 미등록 이주민 자녀도 ‘부모의 근로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 ④ (장애아동) 장애아 가족양육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확대 추진

#### ○ 돌보미 확보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아동 지원을 위해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검토

\* (’20년) ▲대상요건(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시간(연 720시간 / 1일 2.5시간) 등

#### ○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본격 추진(’20~)

\* ▲(’19년 첫 시행) 대상자(4,000명), 돌봄시간(44시간) → ▲(’20년) ▲대상자(7,000명) 확대 등

### ③ 취약계층 교육 등 지원 강화

#### ▶ 교육급여 지원사업 개편

- 고교무상교육 시행·확대 계기, 저소득층 학생의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 지원항목\* 재구조화 방안 마련

\* (현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습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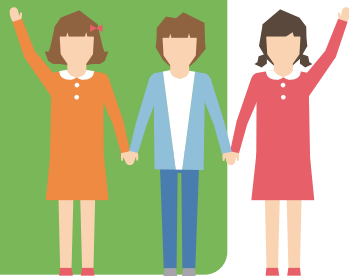
-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등을 통한 내실 있는 학업중단 예방 정책 추진
-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학습경험 학력 인정’ 다양화 등으로 학력 취득 지원
  - \* 국가공인자격, 검정고시, 직업훈련기관 학습, 산업체 경험 등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하고 기준 충족시 학력으로 인정

####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 추진
  -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전문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운영 등 취업지원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홍보 및 차별·권리침해 사례 발굴을 위한 온라인 신고방 운영 및 모니터링

# 4.

##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01

## 사회적 돌봄 제약 상황에서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1 현황

#### ▶ 가정양육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양육 역량’ 약화

- 가계 소득 상실 및 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 아동성장·발달에 필요한 환경 붕괴 등 물질적 지원 악화 가능
- 생활고, 보호자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아동학대 뿐 아니라 원가정해체 등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 ▶ ‘비대면 일상화’로 사회적 돌봄 이용의 어려움

\* (예) 어린이집, 학교 등 각종 시설이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 운영 → 돌봄, 급식 등 이용 애로

- 이로 인해, 보호자 양육 스트레스 확대 - 신체·정서적 학대 - 가정해체 가속화 등 악순환 우려 →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

### 2 정책 방향

#### 주요 관리 지표

▶ ‘22년까지 종합적인 가정양육 역량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체계화

#### ▶ 소득-시간-양육자 인식·태도 등 종합적인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 (소득) 경제침체 장기화, 격차 심화에 대응하여, 아동 양육 가구의 아동 성장 숲 기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 (시간) 돌봄시설 이용 제한 등을 대비,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양육자 인식·태도) 아동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부모교육 실시,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3 중점 추진과제

#### ① (소득) 아동수당 역할 강화

##### ▶ 아동 가구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발전방안 모색

- 일상화된 사회적 위험 하에서 아동가구 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가정 양육 역량 제고에 기여하도록 아동수당 발전방안 강구 추진
  - 아동수당 지급범위 점진적 확대 등 아동 양육에 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 및 양육지원체계 개편 검토
  - \* (해외사례) OECD 32개국 중 15세 이상까지 지급하는 국가가 29개국(18세 이상 2개국, 18세 미만 17개국, 17세 미만 1개국, 16세 미만 9개국)
-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위기시 ‘아동수당 금액’, ‘형태’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병행 검토
  - \* (사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경을 거쳐 한시적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만 7세미만 아동가구 대상,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추가로 지원

#### ② (시간) 아동 -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보장

#####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모성보호 사각지대 보완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中

▷ ... (중략)...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 (생략)...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해나가겠습니다...(생략)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직 종사자(학습지 교사 등)·자영업자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추진
  - \* 예술인부터 출산전후 급여 적용( 20.12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예정)
- 기간제 근로자의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보장\* 추진
  - \* 기간제 근로자 등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만료되어도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보장 (고용보험법 개정사항)
- 국가재난 발생 시 가족돌봄 지원 제도화
  - 신종 감염병 대규모 확산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등 지원 방안 마련
  - \* 고용정책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 ③ (양육자 역량) (학)부모 교육 강화

#### ➡ (학)부모교육의 체계적 실시

-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학)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 양육 관련 교육 /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 부모·자녀·부부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교육 및 상담 지원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학부모 자녀교육·교육정책 이해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

- 기존 (학)부모교육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아동 권리, 양육, 학대예방 교육 등 발달 단계별 아동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 (학)부모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달체계 검토 등 포함

#### ○ (학)부모교육 이수 제도화 및 인센티브 검토

- 아동 관련 사회보장급여 지급과 연계 검토

- (학)부모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학)부모교육 이수, 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아동복지 급여·서비스 연계방안 모색

- (학)부모교육 이수시 마일리지(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에 해당하면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시 가점, 우선 지급 등 검토

\* (예) 일정 시간 이상 (학)부모교육 이수시 →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우대, 정부지원 프로그램(예 : 자금대출)에 다른 건에 비해 우선 심사(30일 → 15일 이내 답변 등) 등



# 02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아동돌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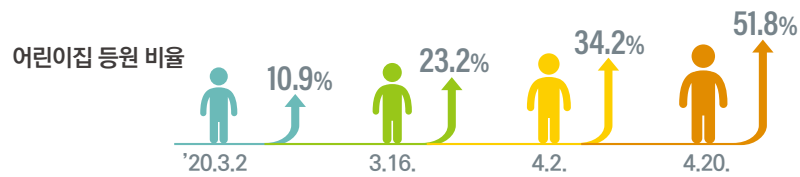
#### ▶ 코로나19 장기화 전망, 예측치 못한 신종 감염병 등장도 가능

- \* ▲세계적으로 확산 지속 추세, ▲코로나19는 변이가 커 치료제 개발 시일 소요 전망,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 인간 - 야생동물 접촉기회 증가 등으로 신종 바이러스 등장 가능 등

#### ▶ 감염병 확산 방지(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회 전반에 디지털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확산

- \* ▲(소비) 배달앱(도시락 배달), 온라인 쇼핑 등 사용 가속화 / ▲(교육) 온라인 교육 / ▲(기업) 재택근무, 영상회의 활성화 등

#### ▶ 시설 휴원 등 사회적 돌봄공백이 증가하고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시설 이용 수요 증가



### 2 정책 방향

#### 주요 관리 지표

▶ '24년까지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행

\* (방안 예시) 아동 AI 서포터즈(아동 안전관리, 위생관리, 학습지원 등 기능) 시범 보급 등

#### ▶ 보호·돌봄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기반 조성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성원 교육, 시설 소독·위생관리와 좁은공간-인원밀집 해소 개선 등

#### ▶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의 시설, 가정내 돌봄 지원 체계 구축

- 재난 발생·시설 종사자 감염병 감염 등으로 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 가정의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한 신속한 지역기반 지원체계 마련

#### ▶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스마트기기, 인공지능 등 활용하여 원격 사례관리 등 비대면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추진



### 3 중점 추진과제

#### ① 보호·돌봄시설의 감염병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대응 매뉴얼 체계화

###### ○ 종사자 교육 강화

- 시설 종사자에게 시설 방역방법, 방역물품 구비, 일상소독 등 방역 및 위생수칙 등 교육 실시
- 사회복지서비스 실무자 교육 범위(사회복지사 실무 능력 + 감염병 등 위기·사회변화 민감성 대처 능력) 추가·확대

###### ○ 기관별 지침에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 평상시 감염병 예방요령, 감염병 확산시 초기대응 등을 기관별 지침에 규정, 일관된 대응체계 구축
  - \* ▲(평시) 1일 1회 종사자, 아동 주기적 건강상태 확인, 주1회 시설방역실시, 방역물품 비치 등
  - ▲(감염병 확산시) 1일2회 건강상태 확인, 1일1회 시설방역 등 강화된 방역기준 적용
- 대응 매뉴얼, 지침에 따라 시설소독·위생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주기적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 시설 면적기준, 인원비율 등 개선

###### ○ 시설의 아동 1인당 면적, 보육교사 대 아동 수 등 조정 검토

- 집단 발병 가능성을 낮추고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질 제고 가능
  - \* (현황) ▲(아동복지시설) 아동 1명당 6.6㎡ 이상 / ▲(어린이집) 1인당 전용면적 4.29㎡ 등
  - \*\* (만 5세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한) 1:20, ▲(미국) 1:10~12, ▲(호주) 1:10~11

###### ○ 감염 예방을 위한 탄력적 학사 지원

-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 (보호자 책임 下 가정학습 → 출석 인정)
  - \* 사전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시 인정

## ② 긴급돌봄지원체계 구축

### ▶ 재난 상황 대비 공공 돌봄 가이드라인 마련

- 감염병 등 긴급 재난 상황 발생시 긴급돌봄체계로 전환하여 지원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돌봄기관 가이드라인 개선

\* (사례) 코로나19 폭증시 민간제공 서비스 공백 발생,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노인·아동·장애인 대상 긴급 돌봄 제공

### ▶ 지역 협력 기반 긴급 돌봄체계 운영

- 종사자 감염병 감염 등 재난발생시 지자체, 지역복지자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중단된 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 가족 확진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도시락(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참고 :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실적 ('20.4.20기준)



▷(아동) 아동 52명에 대해 돌봄인력 566명(누계) 투입 및 식사지원

\* ▲가족 확진으로 임시 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 및 동거 가족 확진으로 자가격리, 이용기관 휴관에 따른 돌봄 공백 아동 21명에게 가정생활 지원(인력 566명) 및 식사 지원, ▲동거 가족 확진으로 기타 돌봄이 필요한 아동 31명에게 식사 지원 ▲긴급돌봄수당 160명 접수 등

▷(노인) 노인 73명에 대해 돌봄인력 870명(누계) 투입 및 식사지원

▷(장애인) 장애인 54명에 대해 돌봄인력 240명(누계) 투입 및 식사지원, 타 서비스 연계·지원

▷(기타) 긴급돌봄필요자 1명에게 약품 수령 서비스 지원 (인력 1명)

▷(식사지원) 총 130명에게 식사(도시락 5,354인분) 지원 (인력 142명)

▷(정신건강증진 전화상담지원) 인력 334명(누계)

### ③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 (가칭)아동 AI 서포터즈 도입

○ 감염병 확산 등 대면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상담 및 아동 양육환경 점검을 위한 ‘아동 AI서포터즈’ 시범 보급

- 돌봄 취약가정\* 유형별 욕구분석 및 활용 가능한 AI 기술 매칭 등 시범사업 및 단계별 기능 확대 검토

\* 정보접근, 학습지원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가구, 조부모가구 등 돌봄 취약가정 우선 보급 검토

#### 예시 : 단계별 기능 확대 방안



▷ (1단계) 아동 건강관리, 학습지원, 부모의 육아정보 등 생활 관리기능 등 기본기능 탑재  
(2단계) 웹캠 등 원격사례관리 서비스 기능 추가

\* 서비스제공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등) 내 ‘원격사례관리 가능 환경’ 조성 필요

• 기관 내 스크린, 스피커 등 디지털 장비 설치,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 필요

○ AI에 부모교육·아동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 부모교육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등 제공하여 아동가구의 수용성 제고

\* (예) AI 서포터즈의 부모교육 이수시 ‘부모교육 마일리지’ 적립 →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심사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

“

행복한 아동기  
건강한 사회발전,  
장기적인  
아동 - 가족 투자

”

V

기대 효과



### 01 아동이 권리주체로 존중받고 자존감과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 아동 삶의 만족도 : ('18) OECD 최하위 ⇒ ('24) 중하위권 ⇒ (장기) 중상위권

- 각종 정책에 **아동을 고려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아동기본법 제정('22), 아동정책 영향평가 활성화, 아동총회 의견 아동정책조정위 보고·심의 등
- 아동청원(온라인)으로 아동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우범소년 제도 개선,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등 인권·권리에 기반한 아동중심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 02 놀이-학습이 균형잡힌 환경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 아동우대제도 : (현재) 미시행 ⇒ ('24) 시행 / ▲ 재학대판정율 : ('18) 10.3 ⇒ ('24) 7.7%

- 아동이 **아동친화도시, 놀이선도지역, 학교에서의 놀이지원** 등으로 즐겁게 생활하고 우대제도로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한다.
- 아동대상 **신종 성범죄 예방·처벌, 교통·식품안전,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학대예방·피해아동 심리치료는 전문화됩니다.

### 03 다름이 격차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공정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 공적 아동보호체계 완비(아동학대 전담인력 배치 완료) : (현재) 미배치 ⇒ ('24) 100%

- 보호필요아동이 개별 상황에 맞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통합된 아동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급여,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이 마련된다.

### 04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하에서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비대면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 : (현재) 미시행 ⇒ ('24) 시행(아동 AI 서포터즈)

- 아동수당이 아동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부모가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정양육 환경**이 조성된다.
- 감염병 등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아동돌봄·보호시설 대응체계**가 마련되고,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되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참고 1

##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 1 기본방향

- ▶ 행복한 아동기가 국민 개개인 전체 인생의 만족도 및 건강한 사회 발전에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 장기적으로 아동-가족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재원 투입을 고려한다는 원칙 수립

참고(예시) : OECD 평균 수준을 위해 추가 투입이 필요한 재원 추계



- OECD 국가의 GDP 대비 아동가족 지출비중 평균은 2.0% VS 한국은 1.2%(OECD Family database)  
→ 0.8%p 차이, 장기적으로 국내 GDP의 0.8% 추가 투입 필요
- '18년 GDP 고려시 0.8%는 약 14.2조원에 해당 ('19년 아동관련 재정소요액은 약 22.0조원)  
→ 향후 10년간 2.0% 달성 목표 가정시, 매년 1.4조원씩 추가 재원 투입 필요  
(단, 실질경제성장률 0%, 물가상승률 0% 가정시)

### 2 추진전략

- ▶ 국민적 동의 등을 통해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점진적으로 재원 투자 확대 방향 견지
- ▶ 추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계기시 재원투자 확대 방안 연계 검토

### 3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 ▶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구체화·제시하고, 각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 예산 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
- ▶ 확대·신설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재원마련 방안 등 종합적인 사전 검토를 거쳐 추진



참고 2

주요 법령 제·개정 관련 필요사항

Ⅰ 소관부처가 2개 이상인 과제는 부처 협업과제로 공동 관리

분야	과제명	법령명	내용	소관
권리	• 아동 중심 정책 반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가칭)아동기본법	제정	복지부
	• 가사소송시 아동 의견표명권 강화	가사소송법	개정	법무부
	• 학생회 법제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육부
	• 출생통보제 도입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법무부
	• 보호(익명)출산제 도입	(가칭)보호출산법	제정	복지부
	• 우범소년 제도 개선	소년법	개정	법무부
	• 아동정책조정위에 아동총회 결과보고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	복지부
	• 미성년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친권자 친권상실·제한 사유 구체화			
	•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법제화	민법	개정	법무부
발달 지원	• 온라인 그루밍 예방, 처벌 근거 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여가부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경찰청
	•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 관리기준 마련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개정	국토부
	•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확대	어린이 식생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식약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 즉각분리제도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	복지부, 법무부 등
보호	• 아동보호전담 민간전문인력 배치근거, 사례결정위원회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개정	복지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사법처리 신청권 부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법무부
	• 입양 전 과정 공적 책임 강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복지부
	• 해외입양 관련 사항 제정	국제입양법	제정	복지부
	• 전문위탁가정제도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	복지부
코로나 19 대응	• 아동수당 발전방안 모색	아동수당법	개정	복지부
	•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부





참고3

##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현황

정책과제는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고, 매년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

### I 소관부처가 2개 이상인 과제는 부처 협업과제로 공동 관리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부처)
<b>1.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b>		
1-1. 각종 정책에서 아동권리가 실현되도록 정책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1-1-1. 아동 중심 정책 반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1-1-1.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		복지부
1-1-2. 아동정책 영향평가 전면 실시		
1-1-2-1. 주요 아동계획 대상 아동정책 영향평가 실시		복지부
1-1-2-2. 지역 아동정책으로 영향평가 확대		복지부
1-1-3. 지역 아동복지사업 품질 제고		
1-1-3-1. 아동복지사업 지역적 불균형 개선		복지부
1-1-3-2. 시도단위 아동정책 조정 지원체계 마련		복지부
1-2. 아동참여, 의견표명권 보장 등 생활속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1-2-1. 행정·사법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보장		
1-2-1-1. 정책 결정시 아동참여 제도화	• 온라인 상 아동 의견 표명 창구 (가칭 ‘아동청원’) 설치 추진	복지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총회’ 결과보고 의무화	복지부
	•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한 아동정책 참여 활성화	여가부 복지부
	• 학교에서의 참여권 제도화	교육부
1-2-1-2. 사법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강화	• 가사소송시 아동 의견표명권 도입, 진술기회 보장	법무부
	• UN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추진	복지부
1-2-2. 아동이 중심에 있는 아동권리 보호		
1-2-2-1. 모든 아동에 대한 공적 등록제도 도입	• 출생통보제 도입	법무부, 복지부
	• 보호(익명)출산제 병행도입	복지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부처)
1-2-2-2. 우범소년 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
1-2-2-3.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개선	•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	복지부
	• 친권자 친권상실·제한 청구 사유 구체화	복지부
	• 후견인 수임 기피 개선 추진	복지부
1-2-3. 아동권리 사각지대 해소		
1-2-3-1. 일하는 아동의 권리보호	• 인터넷 키즈 콘텐츠 참여 아동 보호	방통위 복지부
	• 대중매체·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방통위 고용부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1-2-3-2. 가정 생활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	• ‘징계권’ 법제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	법무부
	• 가정 내 아동권리 보장 환경 조성 (부모교육, 밥상머리 인터넷 교육 등)	복지부 방통위
<b>2.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b>		
2-1. 놀이 확대와 균형있는 교육으로 즐거움 속에서 미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1. 아동에게 친숙한 놀이·여가활동 조성		
2-1-1-1. 아동 문화시설 등 이용 우대·할인 확대		복지부
2-1-1-2. 아동친화도시 제도화·확산		복지부
2-1-2. 지역, 연령 등 감안한 맞춤형 놀이·여가 지원		
2-1-2-1. 지역사회 놀이 지원체계 구축	• 놀이혁신위원회 운영 및 놀이 행동지침 수립	복지부
	• 지역사회 주도 놀이 혁신 지원	
	• 아동발달 R&D 기획 및 시행	
2-1-2-2. 영유아-초등학교 놀이 시간과 공간 확충	• 영유아 놀이시간 보장 및 공간 확보	교육부 복지부
	• 창의 활동 중심의 학교 공간개선 및 시간확보	교육부
	• 부모,교사 등 놀이지원자 인식 및 역량 강화	교육부 복지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부처)
2-1-2-3. 아동 특성을 고려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 아동대상 문화 프로그램 확대, 독서 습관형성 지원		문체부
	• 아동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체육프로그램,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		문체부 교육부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관광 프로그램 지원 확대		문체부
	• 게임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		문체부
2-1-2-4. 놀이·여가 활동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연계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시 (놀이선도 지역 등)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연계		복지부
<b>2-1-3. 지나친 학습 경쟁 완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b>			
2-1-3-1. 초·중·고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육부
	•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경감 추진		
	• 양성평등교육 강화		
2-1-3-2. 진로·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강화	•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교육부
	•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		
<b>2-2.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아동 건강을 충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b>			
<b>2-2-1. 아동의 신체건강 관리 강화</b>			
2-2-1-1.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생활위생 관리강화			교육부 질병청
2-2-1-2. 효과적 건강관리를 위한 3대 시범사업 실시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도입 추진		복지부
	• 아동치과주치의제도 도입 추진		
	• 천식, 아토피 등 만성질환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집중관리 추진		
2-2-1-3. 건강 취약아동 치료· 관리 및 부모 돌봄 지원 강화	•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지원 강화		복지부
	• 장애아동 의료접근성 강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병원 확충 등)		
	• 부모의 자녀돌봄지원 강화(단기돌봄센터 설립,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선)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부처)
2-2-2. 아동의 마음건강 관리 강화		
2-2-2-1.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확충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 아동자살 예방 심리부검 DB구축	
	•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운영	
	• 학교-지역사회간 마음건강 지원 체계간 연계 활성화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2-2-2-2. 민간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질·접근성 제고	• 민간 상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정비	복지부
	• 마음 건강 서비스 바우처 지원 확대	
2-2-2-3. 학생-교사 대상 마음 건강 교육 강화	• 학생 대상 교과기반 마음건강 교육 실시	교육부
	• 교원대상 마음건강 연수운영	
2-2-3. 새로운 건강 위협요인 대응 강화		
2-2-3-1. 스마트폰·인터넷 등 바른 사용 역량 강화	• 과의존 예방 및 건강한 이용습관 형성	과기부 문체부 여가부
	• 다양한 치유상담 서비스운영 및 민관협력 프로그램 발굴·운영	과기부 여가부
	• 건강검진 항목에 스마트폰 사용 등 사항 포함	복지부
2-2-3-2.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 방안 마련	• 공기정화장치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미세먼지 저감화	교육부 복지부
	• 미세먼지 대응 교육 강화	교육부
2-2-3-3.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사용 억제	• 담배 판매자 등 단속 강화	여가부
	• 전자담배 유해성 교육 및 홍보 강화	복지부
2-3. 폭력과 사고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2-3-1. 아동 성범죄 예방 및 '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 강화		
2-3-1-1. 아동 대상 신종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추진	• 온라인 그루밍 예방, 처벌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여가부 (법무부)
	• 잠입수사, 온라인 성착취 관련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여가부 경찰청 (법무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부처)
2-3-1-2. '유아 성행동 문제' 발생시 아동관점 대응 체계 강화	• 아동중심, 아동보호 관점의 현장 대응매뉴얼 마련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 조사 - 상담 - 치료 등을 포괄한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마련	
	• 아동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추진	
2-3-2. 교통, 학교, 식품·공산품 등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		
2-3-2-1.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및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행안부 경찰청
	•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기준 마련	국토부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경찰청
2-3-2-2. 「학부모안심유치원」 확대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 「학부모안심유치원」 전국확대	교육부
	•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및 교육	복지부 환경부
2-3-2-3. 어린이 주요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2-3-2-4. 어린이 먹거리 안전·위생 관리 강화	•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급식 공급업체 집중 위생점검	식약처
	•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광고 모니터링, 어린이 식품 조리 판매업소의 영양성분 등 표시 확대	
2-3-2-5. 아동 사용 제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유통 前(인증제도)·後(리콜제도) 제품안전 관리 이행	산자부
	• 제품안전기준 정비, 사업자컨설팅 지원 및 유통제품 시장감시 추진	산자부 환경부
	• 어린이 제품 시험인증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	산자부
2-3-2-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학교 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교육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한 교육적 대응 강화</li> <li>•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 · 지원체계 강화</li> <li>• 가해학생 교육 · 선도 내실화</li> </ul>	교육부
2-3-2-7.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강화		방통위
2-3-3. 정보연계-협력 등을 통한 아동학대 근절		
2-3-3-1. 정보공유 · 연계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학교 간 정보공유,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운영 등</li> <li>• 부처 간 정보연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빅데이터 분석 · 활용</li> </ul>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2-3-3-2.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호시설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li> <li>• 학대조사업무 공공화 전면 시행</li> </ul>	복지부
2-3-3-3. 친권 제한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각분리제도 도입</li> </ul>	복지부
2-3-3-4.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 맞춤형 교육 등 인식개선</li> </ul>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 신고제도 내실화</li> </ul>	법무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대응) 현장조사 이행력 강화</li> </ul>	법무부,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지원) 경제-심리-회복지원</li> </ul>	여가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발방지) 학대발생 가정 사후관리</li> </ul>	복지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체계)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li> </ul>	복지부
<b>3.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b>		
3-1. 공적 보호체계를 완비하고, 돌봄 확충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3-1-1.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구축		
3-1-1-1. 공공 인력확충 및 기관별 업무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li> </ul>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업무 전문화</li> </ul>	
3-1-1-2. 전문인력 전문성 등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인력 교육체계 운영 (보장원-인력개발원 등 협업)</li> </ul>	복지부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종사자 아동학대 현장 대응역량 강화</li> </ul>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부처)
3-1-2. 입양·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 활성화		
3-1-2-1. 입양 전 과정에서 공적책임 강화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복지부
	• 국제입양법 제정	
	•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 결연위원회 도입 검토	
	• 입양기관 지원방식 개선	
3-1-2-2. 가정형 위탁 중심 아동보호 활성화	• 예비 일반위탁 부모 추가양성	복지부
	•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확대	
	• ‘전문가정위탁’ 제도 법제화 및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강화	
3-1-2-3. 아동양육시설 지원방식 개선	복지부	
3-1-3. 입양 사후 서비스 및 실종아동 찾기·지원 확대		
3-1-3-1. 입양사후서비스 개선 및 친가족 찾기 지원 확대	•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심리상담서비스 도입 등	복지부
	• 친부모 찾기 절차개선 및 지원 강화	
3-1-3-2.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지원 확대	• 실종아동 예방 홍보 강화	복지부 경찰청
	• 실종아동 정보 전자등록 및 연계	
	• 맞춤형 실종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3-1-4. 아동복지정보 연계 및 통합		
3-1-4-1.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부	
3-1-4-2. 아동 성장주기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3-1-5. 아동 돌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3-1-5-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가정-지역사회 돌봄지원 강화	• ’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	복지부
	• 가정 내 아이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공동육아 지원 확대	여가부
3-1-5-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서비스 질 제고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 다함께 돌봄센터 대폭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복지부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활성화	여가부
3-1-6.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3-1-6-1. 유치원 3법 이행관리 강화	교육부	
3-1-6-2.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개인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등 형태로 전환	복지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부처)	
3-2. 빈곤과 다양한 배경이 골레가 되지 않도록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2-1.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 확보			
3-2-1-1. 아동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강화	• 아동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강화	국토부	
	•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중간평가 및 개선과제 발굴	국토부	
3-2-1-2. 지역사회 단위의 취약 계층 아동지원 강화	• 드림스타트 질적 개선 추진	복지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적극적 개입 등 역할 강화	법무부	
3-2-1-3. 보호종료아동 대상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 확충 (자립수당, 공공주거지원, 전문심리 상담지원, 정보제공 등)		복지부	
3-2-2. 다양한 배경의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3-2-2-1. (한부모) 자녀양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건강, 주거 등 지원 강화	여가부	
	• 한부모근로자 육아지원 강화	고용부	
3-2-2-2. (이주배경 아동) 서비스 다양화 및 의료 등 필수 서비스 지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강화	여가부	
	• 다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한 인식 제고 추진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시범도시' 운영	여가부	
	• 미등록 이주민 자녀 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3-2-2-3. (장애아동) 장애아 가족양육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확대 추진	• 장애아 가족양육 서비스 확대 검토	복지부	
	•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본격 추진		
3-2-3. 취약계층 교육 등 지원 강화			
3-2-3-1. 교육급여 지원사업 개편		교육부	
3-2-3-2. 학업중단 예방 및 학습 지원 강화		교육부	
3-2-3-3.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 등	여가부	
	• 학교 밖 청소년 부정적 인식개선 홍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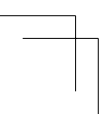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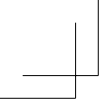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부처)
<b>4.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b>		
4-1. 사회적 돌봄 제약 상황에서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1-1. (소득) 아동수당 역할 강화		
4-1-1-1. 아동가구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발전방안 모색		복지부
4-1-2. (시간) 아동 -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보장		
4-1-2-1.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모성 보호 사각지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 추진</li> <li>• 국가재난 발생시 가족돌봄 지원 제도화</li> </ul>	고용부
4-1-3. (양육자 역량 강화) (학)부모 교육 강화		
4-1-3-1. (학)부모교육의 체계적 실시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4-1-3-2. (학)부모교육 이수 제도화 및 인센티브 검토		
4-2.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아동돌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4-2-1. 보호 · 돌봄시설의 감염병 재난 대응 역량 강화		
4-2-1-1.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대응 매뉴얼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교육 강화</li> <li>• 기관별 지침에 감염병 관련 대응 매뉴얼 규정</li> </ul>	질병청
4-2-1-2. 시설 면적기준, 인원비율 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의 아동1인당 면적, 보육교사 대 아동 수 등 조정 검토</li> <li>• 감염 예방을 위한 탄력적 학사 지원</li> </ul>	복지부 교육부
4-2-2. 긴급돌봄지원체계 구축		
4-2-2-1. 재난 상황 대비 공공 돌봄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 (관계부처)
4-2-2-2. 지역 협력 기반 긴급 돌봄체계 운영		복지부 (관계부처)
4-2-3.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4-2-3-1. (가칭) 아동 SI 서포터즈 도입		복지부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 ~ '24

---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인	보건복지부
편집인	보건복지부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안내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제2차 '20~'24 아동정책 기본계획

